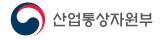
KOTRA자료 19-007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 = Defense Exports Overall Guide Book









# CONTENTS

1.	방산수출 개요	4
2.	수출 사전준비	7
	2-1. 수출허가 대상품목여부 확인	8
	2-2. 수출통제 대상국가 확인	11
	2-3. 수출 가능성 검토	13
	2-4. 수출(중개)업 신고	14
3.	정보수집	15
	3-1. 수집 대상 정보	15
	3-2. 해외시장정보 제공기관	17
	3-3. 개별 정보 입수방법	23
4.	방산수출 지원제도 및 사업	24
	4-1. 수출기회 모색	25
	4-2. 수출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	34
	4-3. 수출역량 확대	45
5.	입찰참여 및 계약추진	48
	5-1. 파트너 발굴	48
	5-2. 해외 입찰 참여	55
	5-3. 주요 국가별 조달절차	68
	5-4.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71

#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6. 정부간 판매제도 활용	74
6-1. 정부간 거래란?	74
6-2. 정부간 계약(G2G) 활용	75
7. 수출허가 및 행정절차	80
7-1. 국내 수출허가	80
7-2. 기술료 협의와 실시권 및	
기술이전계약	85
7-3. 해외 수출허가	88
8. 해외인증, 성능시험 <mark>,</mark>	
해외 <mark>지식재</mark> 산권 보호	91
8-1. 해외규격인증 취득	91
8-2. 성능시험 지원제도	95
8-3. 해외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97
9. 방산수출 금융지원	100
9-1. 수출신용상품	106
9-2. 직접대출	110
9-3. 이행보증	113
10. 절충교역 활용 수출	118
10-1. 절충교 <mark>역이란?</mark>	118
10−2. 부처별 지원사업	124
10-3.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27

## 01 발산수출 개요

## 가. 방위산업의 수출은?

-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 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 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함
- \* 이외의 전략물자(전략물자 중 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는 산업부장관 (전략물자관리원)의 수출 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 나. 방위산업 수출 키워드

① 제한적 정보공개 ② 방산수출절차의 특수성 ③ 정부 지원 ④ 입찰 및 조달

## ① 제한적 정보공개

- 방산 품목의 특성상 국가별 조달 현황 및 계획 등이 국가안보와 직결 되어 정보취득이 매우 어려움
-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제한되어있는 조달 절차나 국외구매 계획의 경우 국방부 및 조달 관련 기관에서 대외 비공개하여 진행하거나, 내국인 및 내국기업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의 진입이 어렵고 현지 네트워크 발굴이 필요

- ② 방산 수출 절차상 특수성 : 수출통제(허가), 기술료 협의, 해외수출 허가서 획득, 성능시험, 절충교역
  - ㅇ 우리나라가 국제평화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한 다자간 수출관리체제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방산물자 수출 시 방위사업청 의 수출 허가를 의무로 취득해야 함
  - ㅇ 또한, 방산물자의 경우 국가가 통제하는 수출, 기술의 거래 및 이전, 취급 등 유의할 사항이 많음
  - ㅇ 수출 시 수출 허가, 기술료 협의, 해외 수출 허가서 획득, 절충교역 의무 이행 등 독특한 방산 수출의 절차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③ 정부 지원

- 방산 수출을 위하여 설립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방위산업 의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과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품질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사업 참여가 필요함
- ㅇ 또한 해외 조달계획의 파악 및 입찰 참여 시 외국 국방부 및 파견 무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
- ㅇ 국방부, 방사청 등과 협의를 통해 각 군의 중고 무기 수출 및 대여 등이 가능
- 정부간 계약(GtoG)이 필요할 경우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를 통해 수행

## ④ 입찰 및 조달

- ㅇ 일반적인 조달 및 입찰절차 이외에도 별도 조달 절차나 성능시험. 수락 검사, 수출과 관련한 통제사항 등 확인 필요
- ㅇ 또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 참가가 제한적인 경우에 사전 준비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다. 방위산업 수출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 필요시항 및 절차	검토 및 관련 사항	관련 기관
	수출통제 대상 품목 여부	전략물자/방산물자 여부 수출 허가 필요 여부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사전 준비	수출통제 대상 국가 확인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사전 행정절차 확인	수출 가능성 검토 수출업 신고 여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b>+</b>			
	국가별 방위산업 구조 및 특성		방위사업청(D4B),
정보수집 및	주요 획득사업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시장분석	획득 절차		국방기술품질원
_	방산 협력 현황		
<b>+</b>	기초 마케팅 활동	시절단, 상담회, 전시회 등	
TI TILLI I			KOTRA,
마케팅사업 참여	수출역량 강화	정부 지원사업 참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방위사업청
급어	수출역량 확대	해외 네트워크 구축	011160
<b>↓</b>	에이전트 발굴		
	입찰/구매정보획득	공개/비공개정보 취득	방위사업청(D4B),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품질원
	벤더 등록	대외개방/내국민한정 여부	
	입찰 참여	입찰보증, 견적서 제출 및 입찰 제안서 작성	
	심사	기술 심사, 가격심사	
입찰 및 조달		수출 허가	방위사업청
참여		기술료 협의	국방과학연구소
		해외수출 허가서 획득	방위사업청
	<b>₩</b>	해외인증	
	협상	성능시험	국방기술품질원
		금융 조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_		절충교역 제안	방위사업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b>+</b>	게야네건	OI해비즈 트치츠의	
	계약체결	이행보증, 특허출원	
계약체결	납품	수락 검사	
	사후 이행관리	모니터링, 후속 군수지원 및 수정 협상, A/S 등	

## 02 수출 사전 준비

수출 준비단계에서는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서 해당 품목이 수출 허가 대상인지. 해당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진행하고 수출업 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방산 수출 시 사전 준비를 위한 검토 필요사항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전략물자 (이중용도(군용) 군용물자 품목)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대상 품목 여부	☑ 수출 품목이 <u>전략물자, 방산물자, 국방</u> <u>과학기술</u> 중 어느 것인지의 구분	0	0
수출통제* 대상 국가	☑ 수출이 가능한 국가인지 여부	0	0
수출 가능성 검토	☑ 계약추진 시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 사전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0	0
수출(중개)업 신고	☑ 수출중개업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0

#### \* 국제수출통제(수출통제)란?

-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물자의 무분별한 이전을 제한하는 것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생·화학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전쟁 우려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 이에 대한 국제 협의체로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운용하며, 체제별로 수출 허가의 원칙 및 절차, 통제품목이 구체화 되어 있음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구분	바세나르체제 (WA)	핵공급국그룹 (NSG)	미사일통제 체제(MTCR)	호주그룹 (AG)	화학무기금지 협약(CWC)	생물무기금지 협약(BWC)	무기거래조약 (ATT)
회원국	41개국	46개국	34개국	41개국	188개국	163개국	99개국
한국가입	1996	1995	2001	1996	1997	1987	2014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품목	원자력전용 물자/이중 용도품목	미사일관련 물품/기술	생화학무기원료 /제조장치	1,2,3종 독성 화학물질/ 원료	생물작용제	재래식 무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총람

## 2-1. 수출허가 대상품목여부 확인

관련 법에서 정한 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출하려는 품목 및 기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의 구분

< 수출통제 대상 품목 >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정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등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 하에 지정된 물자
분야	재래식 무기,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등	무기체계 중 선정
세부품목	활강 무기, 탄약과 신관 장치, 군전용 폭탄, 어뢰, 미사일, 로켓, 폭발 장치, 군전용 시격통제장비 및 관련 시스템, 군전용 지상 차량, 생화학 작용제, 폭동진압제, 방사성물질, 활성물질(폭약, 추진체등), 군사용 함정, 해군 특수장비, 군 전용 항공기, 운반체, 전자장비, 우주비행체, 고속운동에너지무기/장비, 장갑 또는 보호장비, 시뮬레이션용특수장비, 군용 영상 장비 및 방해 장비, 상기품목의 부품, 단조/주조품, 반가공품, 재료, 기술장비, 지항성 에너지 무기, 군용 극저온 및 초전도장비, 시화성 에너지 무기, 군용 극저온 및 초전도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	총포류 및 이외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장갑차 그밖의 전투기동장비,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 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 및 통제 장비,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 < 전략물자 및 방산물자 수출통제 소관 부처 >

통제품목		근거법령	담당부서	홈페이지
이중용도품목(산업용) * 별표제2의제1부~제9부	$\Rightarrow$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지원부 (전략물자관리원)	yestrade.go.kr
이중용도품목(군용)*, 군용물자품목* * 별표3 및 별표2품목이 수입국 정부의 군사적 목적시	$\Rightarrow$	대외무역법	방위사업청	yestrade.go.kr/ d4b.go.kr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Rightarrow$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d4b.go.kr
원자력전용품목	$\Rightarrow$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원지력안전위원회 (한국원지력통제기술원)	
북한반출입 물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전략물자관리원)	

#### ※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과 기술을 모두 일컫는 광범위한 개념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물품 등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 허가 등 [별표1](전략물자·기술 색인), [별표2](이중용도 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 되는 물품 등
- 전략물자는 ①이중용도품목(산업용/군용), ②군용물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수출 허가 소관 부처(7-1. 국내 수출 허가 참고)가 다름
-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으로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품목으로 제조·개발 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사용목적상 산업용/군용에 따라 구분)
- 군용물자품목이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확한 품목
- \* 통제리스트는 바세나르체제(WA)의 군용품목 통제리스트를 준용하여 ML1 ~ ML22로 구분
- ※ 전략물자의 전문판정(사전판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장
-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대상물품이 별표2(이중용도품목),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 확인 후 필요시 개별수출/중개·경유·환적 허가 등 신청
  - \* 온라인을 통하여 관련 키워드 검색 및 질의응답을 통한 자가판정도 가능
  - ※ 사전판정 신청 시 확인해야하는 정보

[필수서류(yestrade)] 수출품목에 대한 매뉴얼, 사양서, 카탈로그 중 택1

[기본 입력사항(D4B 사이트)] ① 신청인 정보 ② HS정보 ③ 물품명 ④ 규격 및 용도

####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란?

○ 방위산업물자(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 하에 지정된 물자

#### 방위사업법 제 34조(방산물자의 지정)

-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지정
- 방산물자는 주로 완제품 또는 주요 구성품 단위로 지정되며,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 가능
  - \* 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 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국방과학기술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제조·가동· 개량·개조· 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SW 포함)

#### 방위시업관리규정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국과연 주관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 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 정부가 외국 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 <FAQ> 대상품목여부 확인 시 참고할 사항

- 1. 군용물자품목과 이중용도 군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군용물자품목은 군사적인 용도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설계된 제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무기 제작에 사용되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 설계된 물자가 아닌 일반 상용물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군용물자품목이 아닌 산업용 이중용도 전략물자로 분류
- 2. 방산물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 방산물자는 수출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국내 조달원 확보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지정한 것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은 방산업체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전화 (02) 2079-6827, (02) 2079-6829~30

 $(02)\ 2079-6832~7$ 

• 전략물자관리원 심사판정실: 전화 (02)6000-6400

## 2-2. 수출통제 대상국가 확인

수출대상국가의 제반 상황에 따라 수출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로 수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방산물자 수출 허가 대상국 관련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0조(국제입찰참가승인), 제191조(수출예비승인), 제192조(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목의 수출허가)에서 심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음
- ㅇ 국제.입찰참가승인, 수출예비승인, 수출 허가 시 고려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통제 대상국에 대한 세부 내용은 건별 확인이 필요함

####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수출허가 대상국 관련사항]

	[8귀사답전다파영의 구출에가 대장국 전단사왕]
	1.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 가. UN 결의 또는 기타 국제조약(협약,협정)에 의한 무기 금수대상국 여부 나. 국제테러지원, 마약공급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위협 대상 다.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 여부 등
	2.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여부 가. 북한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수출 나. 보안을 요하는 군사기술의 유출 여부 가. 수출로 인해 재외 공관·교민에 대한 반정부단체 등의 공격 가능성
국제입찰 참가승인	3. 수출 주의국 해당여부 가. 분쟁 국가 중 일방에 대한 수출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 나. 특정국가로부터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다. 수출대상 국가 또는 기업이 한국정부 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 물자 거래 부적격자로 공고 또는 통보된 경우 4. 정부간에 체결된 합의서협정 준수 가. 「대외무역법」에 따른「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기본문서 준수 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 국가 또는 품목 해당 여부 다. 외국과의 체결된 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규정 위배 여부
	1. 구매국 가. 불법유출 및 용도외 사용가능성 존재 나. 구매요구서 등 수출허가 서류의 진위 여부 다.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
수출 예비승인	2. 제3국 및 관련국 정부 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국으로의 수출 또는 수출거부 품목의 수출 나. 제3국으로부터 사전동의 또는 허가를 요하는 수출품목의 수출
	3. 외부기관 또는 대내부서 가. 국가안보 저해 우려 나. 국방외교 정책과의 부합 또는 그 외 군사적 주요사안 발생 다. 군사보안을 요하는 품목 수출
수출허가	1. 수출에 주의를 요하는 국가로의 수출 2.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의 수출 3. 타 기관의 요청 등으로 인해 통제가 필요한 품목 및 국가에 해당하는 수출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품목의 수출

#### ※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역

- ① 수출허가지역의 구분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산업부 고시) 별표6에 '전략물자수출지역'을 구분하여 고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가" 지역 및 "나"지역으로 구분
- "가"지역: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에 모두 가입한 국가(29개국)
- "나"지역 : 상기 이외의 국가
  - \* 단, 가지역 및 나지역의 구분은 일부 제출 서류의 면제만 가능한 것이며, 수출지역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나"지역으로 구분
- ② 무기류 및 군용물품의 수출입 제한국가
  -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18.8.16)에 따른 무기류 및 군용물품의 수출입 제한국가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수출·수입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용

#### ※ 무기류 및 군용물품의 수출입 제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 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는 무기류 및 군용물품등의 수출입 제한국인 <u>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공화국, 에리트리아, 레바논, 리비아, 북한, 중앙아프리</u> **카공화국, 예멘** 등 10개 국가를 도착항으로 하는 수출과 이라크, 에리트리아, 리비아, 시리아, 북한, 중앙아 프리카공화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한국은 고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함, UN 등 국제기구 및 평화유지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용 의류 장비, 기술 지원 등은 산업부장관 허가 시 예외 적용 가능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전화 (02) 2079-6827, (02) 2079-6829~30

(02) 2079-6832~7

• 전략물자관리원 제재분석실: 전화 (02)6000-6400

## 2-3. 수출 가능성 검토

#### 수출 허가 이전에 필요한 사전 가능성 검토를 소개합니다.

- < 관련근거 >
  - ㅇ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2조
- < 대상품목 >
  - ㅇ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군용물자품목

#### < 검토내용 >

ㅇ 수출업체는 수출 허가 신청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에 해당 품목의 수출 가능성을 사전 검토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은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며, 주요 방산 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경우 국제입찰참가신청 및 수출예비승인 신청이 추가로 필요로 할 수 있음

## < 신청방법 >

-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에 검토요청. 요청 시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을 활용
-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는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
- ※ 사전검토시 확인해야하는 정보(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20호)
- ① 신청인 정보 ② HS정보 ③ 물품명 ④ 형식 및 규격
- ⑤ 예상수출규모 ⑥ 수출대상국가 ⑦ 수입자(업체) 관련사항
- ⑧ 수입국의 최종 사용자 ⑨ 수입국의 예상 사용용도 ⑩ 수출추진경위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전화 (02) 2079-6827~8 (02) 2079-6837~8

## 2-4. 수출(중개)업 신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관련 근거 >

-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제1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제1, 2항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의 수출허가 등) 제1. 2항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9조(수출업·중개업 신고)

### < 신청 방법 >

- ㅇ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로 아래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신청서식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7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 기술 수출· 중개업 신고서
- 첨부서류 : ①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업체의 보안 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③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 ㅇ 처리기간 : 15일
- ㅇ 유효기간 : 2년
- \* 기간만료 이전에 재신청을 하면 기간 연장 가능, 기존 발급하였던 신고필증 원본 반납)
- < 수출・중개업 신고필증 교부 >
  - 방위사업청(기술심사과)은 신청인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수출중개업 신고필증을 교부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전화 (02) 2079-6827~8 (02) 2079-6837~8

## 03 정보수집

## 3-1. 수집 대상 정보

비공개 자료가 많은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산 정보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 가. 시장 및 동향 분석
  - ① 수출대상국의 방위산업 구조
- ② 주요 획득사업, 최근 도입현황
- ③ 획득 관련 부처 및 근거 법령

- ④ 방산 협력 현황
- ① 수출대상국의 방위산업 구조
- ㅇ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및 특성
- 국가별 방위산업 구조. 국영/민영화 정도. 방산업체 구조 및 특성 등 : 국가별 국방백서 또는 IHS Jane's 등 조사기관의 자료 참고
  - \* 일부 국가는 항공 및 해상분야는 민간업체 소유. 핵심 무기체계는 국가 소유인 경우 등 핵심 방산 분야에 따른 국가 소유 여부가 다양함
- 주요 방산업체 등
- 병력 및 군사력 정보
- ② 주요 획득사업, 도입현황
- ㅇ 군수품 수입 현황 및 절차
- 무기 수입 현황과 국방조달계획 및 군현대화계획을 종합할 경우 향후 획득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 국방지출 및 수입 현황 : SIPRI(Arms Transfers Database 등), IHS Jane's Defense Budget 등 참고
- ㅇ 주요 획득사업
- 군 현대화 계획, 노후 장비 교체계획, 신규 무기체계 도입계획 등

- ③ 관련 부처 및 근거 법령, 획득 절차
- ㅇ 근거 법령(국가별 입찰법)
- 국방조달법령 별도 규정 또는 일반 입찰법에 따른 조달규정 적용 여부
  - \* EU 및 NATO 가입국의 경우 해당 조달 규칙을 따르는지 여부가 중요함
- 이 획득 관련 부처 및 절차
- 소요제기부터 획득 및 운영유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조직, 제도, 절차 등
- 통상 국방부에서 담당하거나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같이 별도 정부 기관이 있는 경우가 있음
- ④ 방산 협력 현황
- ㅇ 해당국 및 한국과의 국제 방산 협력 현황
- 군수·방위산업 협력 조약
- 국제 방위협의체, 통제체제 가입 여부 및 협정 가입현황
- 인근국과의 관계, 경계 대상국과의 관계 등 배경
- 해외 군 재정보조금 사용 여부 등
  - \*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기금을 조달받는 이집트의 사례 등

## 나. 입찰 및 획득정보 제공처

- ㅇ 공식적인 국외 구매정보(입찰 정보)
- D4B/기품원 해외입찰정보, 방진회 입찰 정보
- 국가별 조달입찰정보(국방부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 ㅇ 비공식적인 구매정보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구매정보
- 관계자 면담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계획 확인
- 에이전트를 통한 입찰 정보 및 획득계획 입수
- ㅇ 전문기관을 통한 동향 정보
- 글로벌 디펜스 뉴스(국방기술품질원), IHS Jane's 등 군사전문잡지 등의 동향 정보

## 3-2. 해외시장정보 제공기관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방산 수출 유관 기관을 안내합니다.

### 가. 방위사업청 D4B 해외 입찰 및 해외 방산시장 정보

ㅇ 수출 관련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15년부터 해외 입찰 정보 및 수출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제공

## < 제공정보 >

- ㅇ 해외 입찰 정보제공(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수집자료 : 온라인 유·무료 획득원 및 각국 조달사이트 제공자료
  - \* 주요 획득원 : Global Tenders, MET, MERX, TED, 각국 정부 조달사이트 등
- 입찰 정보 주요항목 : 국가, 무기체계, 품목 특성, 공고 기간 등
- SMS 서비스 : D4B 탑재 입찰 정보 SMS 전송
  - \* 입찰 정보 탑재 익일 입찰공고명 목록을 송신하여 정보 접근성 향상
- ㅇ 해외 시장동향 제공
- 글로벌디펜스뉴스(국방기술품질원)
- 주재관 시장동향(국가별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 ㅇ 국가별 방산시장 정보제공
- 국가별 무기체계 현황, 국가별 획득제도(수출 유망국가 시장진출 가이드북) 제공(13개국)

#### < 이용 방법 >

- D4B(www.d4b.go.kr)에 가입 및 회원 로그인 후 메인화면 하단의 해외 입찰 정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
- 국가별 방산시장 및 해외 시장동향도 상단 메뉴(해외 방산시장정보)를 통해 열람 가능
  - \* 홈페이지-해외방산시장정보-국가별 방산시장/해외 입찰 정보/해외시장동향



\* 출처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R) 홈페이지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 (02) 2079-6368

• 홈페이지: www.d4b.go.kr

### 나.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해외 방산시장 정보

○ 127개 KOTRA해외무역관과 이 중 29개 방산선도무역관을 통해 상시 해외방산시장정보와 구매정보를 파악하여 제공

#### < 제공 정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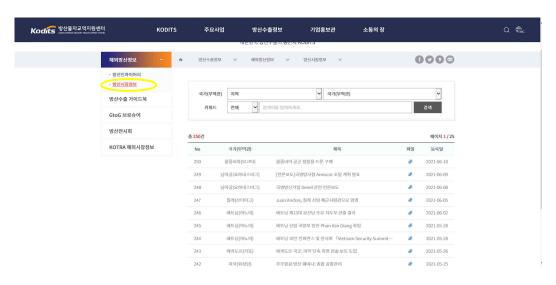
- 해외방산시장정보(공개)
- 매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 각국의 국방 프로젝트, 군사 작전 및 정책 언론 동향 등
- ㅇ 해외 구매정보(공개)
- 해외바이어를 통해 입수한 품목별 구매정보(구매국가, 품목, 사업 및 계약 형태 등) 상시 안내
  - \* 건별로 비공개 사항이 있어 개별문의 필요
- ㅇ 해외전시회정보(공개)
- 해외 방산 전시회 정보(일시 및 장소, 전시 품목 등)
- ㅇ 국가정보(공개)
- 해외무역관에서 조사한 국가별 시장정보 및 경제 동향 등 \* KOTRA 해외시장뉴스와 연동
- ㅇ 절충교역 품목 리스트(공개)
- 절충교역 참여 가능 추천 품목 리스트

## < 이용 방법 >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홈페이지(kodits.kotra. or.kr)→상단의 방산수출정보→방산인콰이어리/방산시장정보 등 클릭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획총괄실: 전화 (02) 3460-7813
- 홈페이지: kotra.or.kr / kodits.kotra.or.kr

## 다. 국방기술품질원 해외 방산시장 정보

#### < 제공 정보 >

- ㅇ 글로벌디펜스뉴스(공개)
-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 정보, 주요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의 주요 획득 동향, 개발 동향 등을 선별하여 제공
  - \*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유도무기 등으로 구분
- ㅇ 국가별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공개)
- 베트남, 케냐, 이집트, 노르웨이 등 13개국에 대한 국가별 조달 입찰 절차 및 제도, 유망품목 소개
- ㅇ 세계 방산시장 연감
- 국가 개황 및 전력구조, 국방예산 현황 및 전망, 방위산업 현황 (주요 방산업체 및 생산능력, 국방 획득 및 조달제도, 무기수출입 현황. 주요 획득 프로그램. 향후 주요 장비 획득 전망 등)
  - \* 방산기술정보 간행물은 기품원 홈페이지(국방망/인터넷)의 DTiMS에서 E-Book/pdf 파일 조회/다운로드 가능

## <이용 방법>

-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g.re.kr)→자료실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dtaq.re.kr)→기술정책/동향→방산시장연감 등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해외시장분석팀: 전화 (055) 751-5490~5495
- 홈페이지: www.dtaq.re.kr / dtims.dtaq.re.kr

## 라. 방위산업진흥회 해외 방산시장 정보

- < 제공정보(회원사만 이용 가능) >
  - ㅇ 국가정보
  - 국가(8개국)\*별 군사 획득정보 등을 자체 작성해서 게재
    - \*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대한민국 등
  - ㅇ 해외 시장동향
  - 각국 획득 동향, 국방 정책, 국방예산, 무기체계 획득계획 등 자체 수집정보를 수시로 게재
  - ㅇ 해외 입찰 정보
  - 온라인 유료 획득원(비공개)을 이용하여 매일 권역별 담당자가 방진회 홈페이지에 게시
  - 권역별 담당자는 정보를 선별 후 아래 내용과 같이 원문 그대로 게시하며, 세부 정보 필요시 회원사가 담당자에 별도 문의

#### <주요 내용>

Israel - Supply O	f A	For A	From
GT Ref. No.	4	- <u>View Details</u>	
Bidding Type Financier	Not Sp	pecified	
Project Location	Israel		
Description		r are Invited for Supply of A rom	for a
Organisation	MINIST	RY OF DEFENSE	
Client Address			
Email Id	@	?mod.gov.il	
Tender Notice No			
Deadline	Thu, 1	4 February 2019	

\* 출처 : 방위산업진흥회, 게시내용 중 일부는 공개를 위해 공백처리함

#### <이용 방법>

○ 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dia.or.kr)→사업 소개→해외 협력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외사업팀: 전화 (02) 3270-6055
- 홈페이지: www.kdia.or.kr

## 3-3. 개별 정보 입수 방법

민간 전문 기관과 에이전트를 통한 방산 정보 입수 방법입니다.

#### 가. 방산 자료 전문기관

####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 ㅇ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군비관리, 군축 문제 연구 및 각종 관련 가행물과 **여보\*** 발행
  - \* 유료자료(£105)로 군사 동향 전반, 군비 지출, 생산 및 국제 거래 등에 대한 내용 수록
- 연보는 핵 군축, 군비관리, 무기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널리 인용되고 있음
- 또한 SIPR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Arms Transfers Database. Arms Industry Database,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등이 있으며 대외 공개되어있음

## < IHS Jane's >

ㅇ IHS Markit은 세계적인 군사 컨설팅업체로 Jane's by IHS Markit는 영국 IHS Markit 사에서 회원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군사 및 보안 정보로 매주 발간하는 Jane's Weekly Magazine 등이 있음

## 나. 방산 네트워크, 에이전트 및 파트너를 통한 입수

- ㅇ 입찰정보 획득 시 한정된 언어 또는 국방조달절차의 불투명한 비공개 프로세스로 인하여 해외 입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 ㅇ 상담회, 전시회 참여시 발굴한 방산 에이전트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료 입수

## 04

## 방산수출 지원제도 및 사업

방산수출기업의 진출단계별(기회 모색→역량 강화→역량 확대)로 참가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

< 단계별 참여 가능한 제도(사업) >

#### 단계 구분

#### 관련 지원제도/사업

수출 기회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 방산 수출사절단
- 한국 방산·보안 수출 주간(KODAS)
- 방산 전시회
-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합동 워크샵

수출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 수출품 정부인증제도(DQ마크)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산 육성 및 수출지원자금 융자
- 방산 수출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 수출 바우처 사업

수출역량 확대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 미국 방산 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 해외지사화사업
- 선도기업 육성사업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지원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 2021년 지원내용은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책자를 발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 kodits.kotra.or.kr, 방위사업청 www.dapa.or.kr에 게재되는 최신사항이 반영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1. 수출기회 모색

## 가. 방산 수출사절단 파견사업(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ㅇ 방산 수출 유망시장 대상 무역사절단 파견하여 현지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에이전트 대상 제품홍보 및 수출 상담 기회 제공
- (기능) 방산센터 기능 및 운영 개선 방안('20.7.8)에 따라 사절단 파견 시 방사청(방진회)은 국내기업 선정, 해외 상담은 방산센터 (무역관)에서 전담

#### < 시 기 >

- 연간 3~4회 / 사업당 수요 유망 2~3개국
  - \* 현지국 긴급 방산 수요발굴 시 예정 사업 외 추진
- < 지원내용(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ㅇ 현지 군 관계자, 바이어, 에이전트와의 1:1 수출 상담
  - 시장현황 소개, 세미나 참석, 네트워킹, 업체 방문
  - ㅇ 상담장. 통역 및 현지 공식 행사에 대한 차량 지원
    - \* 출장 비용(항공임, 숙박비, 식비)등은 업체 개별부담

## < 절 차 >

절차	진행 시기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현지 시장성 평가 진행)	D-90
바이어 유치 및 상담주선	D-60
해외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D-day
사후관리 및 지원	D+1~

- \* '21년은 COV19환경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화상상담으로 진행하며. 방역 여건 개선(자가격리 기간 면제 등)되면 사절단 파견 실시 예정임
- < 무역사절단 파견 예정 내역('21년) >

시기	파견 지역
중동(10-11월)	도하(카타르),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 ㅇ '21년 방산 온라인 화상상담 가능지역

지역	화상상담 가능 무역관(국가)
유럽(6)	마드리드(스페인), 헬싱키(핀란드), 소피아(불가리아), 베오그라드(세르비아), 아테네(그리스), 코펜하겐(덴마크)
중동(6)	암만(요르단), 도하(카타르),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무스카트(오만), 이스탄불(터키), 카이로(이집트)
아프리카(2)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 요하네스버그(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6)	벵갈루루(인도), 마닐라(필리핀), 하노이(베트남),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자카르타(인니), 콜롬보(스리랑카)
북미(1)	워싱턴(미국)
중남미(3)	멕시코시티(멕시코),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키토(에콰도르)

\* 파견 지역 및 시기는 사업 일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청 방법 >

○ KOTRA 홈페이지 → 지원 서비스 안내 → 해외 파트너 상담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획총괄실 : 전화 (02)3460-7306, 7807
- 홈페이지 : kotra.or.kr / kodits.kotra.or.kr

## 나. KODAS 한국 방산·보안 수출 주간(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ㅇ 해외 군 주요 인사 또는 유력 바이어를 방한 초청하여 사전 상담 주선된 1:1 현장 상담을 진행하여 해외 수출기회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
- < 개최 주기 >
- ㅇ 매년 3~4분기 중(국내 방산 전시회\*와 연계하여 추진)
  - \* ADEX 또는 DX Korea 등 국내 방산 전시회와 연계 추진 또는 단독 추진
- < 참가 대상 >
- ㅇ (해외) 군 관계자 또는 바이어, 에이전트 50개 사 내외
- ㅇ (국내) 방산 보안 관련 기업 100개 사 내외
- < 지원 내용 >
- ㅇ 해외 군 관계자 또는 바이어. 에이전트 기업 초청
- ㅇ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1:1 수출 상담 주선 \* 사전 기업 및 상담 품목 정보 공유
- ㅇ 방산 수출 전략 세미나 등 부대행사 개최



## < 절 차 >

절차	진행시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에이전트 방한 유치	D-90
참가기업 모집	D-60
방한바이어와 1:1 상담주선	D-20
사후관리 및 지원	D+1~

## < 신청 방법 >

○ KOTRA 홈페이지 → 지원 서비스안내 → 해외 파트너 상담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방산교역실: 전화 (02)3460-7807
- 홈페이지: kotra.or.kr / kodits.kotra.or.kr

### 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① 방산 전시회(방위사업청)

#### < 관련 근거 >

- ㅇ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 ㅇ 「방산 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 < 지원 대상 >

일반 업체(방산업체 제외, 방산업체의 경우 전시회 참가비용을 방산 원가로 인정)

### < 대상 품목 >

지정방산물자, 군용전략물자, 국방과학기술포함 물자, 이중용도품목 중 군사용 품목 등

#### < 대상 사업 >

ㅇ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을 인정한 국제 방산 전시회 및 시장개척 활동

## < 지원 내용 >

구분	지원대상(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전시회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한국관 중소/중견기업		1. 중소기업관 임치료 및 장치비 2. 통역비 3. 홍보물 제작비 4. 공동교통비	100%	2억 4천만원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80%	2천만원
국내전시회	중소/중견기업		3.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 출처: 「방산 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 < 신청 방법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참가 수요조사(전년도 7~8월) → 지원 대상 전시회 선정 → 방산 전시회 참가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공지(9월) → 전시회별 참가계획서・지원신청서 제출(방진회 경유 방위시업청 신청/참가 90일 전) → 전시회 참가 지원 승인 → 전시회 참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참가 결과 보고 제출 → 관계 서류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지급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 (02) 2079-6376

• 홈페이지: www.dapa.go.kr

## < '21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방산전시회(방위사업청 지정) >

구분	전시회명	개최국	기간	전시분야	비고
1	IDEX	UAE	2.21 <sup>~</sup> 25	방산/항공	중기관운영
2	Indo Defence	인도네시아	4.7~10	육/해/공	"
3	ADAS	필리핀	5.5~7	육/해/공	"
4	IDEF	터키	5.25~28	육/해/공	"
5	Paris Air Show	프랑스	6.21 <sup>~</sup> 27	항공	u
6	DSEI	영국	9.14~17	방산/보안	"
7	AUSA	미국	10.10~12	육군	"
8	Defence & Security	태국	11.1~4	방산/보안	"
9	VIDSE	베트남	12월중(미정)	방산	"
10	SHOT Show	미국	1.19~22	총기/탄약	
11	Intersec	UAE	1.24~26	보안	
12	ADECS	싱가포르	1월중(미정)	민/군/보안	
13	Aero India	인도	2.3~7	항공	
14	Marine Military Expo West	미국	2.11 <sup>~</sup> 12	해병	
15	Saudi Air Show	사우디	2.16~18	항공	
16	NAVDEX	UAE	2.21 <sup>~</sup> 25	해상	
17	Colombia MAR	콜롬비아	3.10~12	해상	
18	Trade Show of Security Systems and Equipment	우크라이나	3.12~14	방산/보안	
19	IWA & Outdoor Classics	독일	3.12~15	방산/보안	
20	Aeromart Montreal	캐나다	3.30~4.1	항공	
21	HomSec	스페인	3월중(미정)	방산/보안	
22	LIMA	말레이시아	3월중(미정)	항공	
23	SPIE Photonics West	미국	3월중(미정)	보안	
24	SPIE defense and commercial sensing	미국	4.11 <sup>~</sup> 15	보안	
25	Night Vision & Electro-Optics India	인도	4월중(미정)	보안	
26	Milipol Asia-Pacific	싱가포르	4.6~8	보안	
27	LAAD Defense & Security	브라질	4.6~8	방산/보안	
28	IQDEX	이라크	4.10~13	방산	
29	AMICOM	인도	4월중(미정)	방산	
30	Adriatic Sea Defense & Aerospace	크로아티아	4.21 <sup>~</sup> 23	항공/해상	
31	FAMEX	멕시코	4.21 <sup>~</sup> 24	항공	
32	Armored Vehicle Asia	인도	4월중(미정)	방산/육상	
33	AUVSI Xponential	미국	5.3~6	무인시스템	
34	SITDEF	페루	5.13 <sup>~</sup> 16	방산/보안	
35	LANPAC Symposium & Exposition	미국	5.18~20	육/해 병	
36	DSEI JAPAN	일본	5.19~21	육/해/공	
37	SOFIC	미국	5월중(미정)	특수전	
38	FEINDEF	스페인	5.19~21	방산	

##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 Defense Exports Overall Guide Book

39	ISDEF	이스라엘	6.1~3	방산/보안	
40	Land Forces	호주	6.1~3	육상	
41	CANSEC	캐나다	6.2~3	방산/보안	
42	Shield Africa	코트디부아르	6.7 <sup>~</sup> 10	방산/보안	
43	IDET	체코	6.9~11	방산	
44	MADEX	대한민국	6.9~12	해상	국내
45	KADEX	카자흐스탄	6.10 <sup>~</sup> 13	육/해/공	
46	Aviation Festival Asia 2021	싱가포트	6.22~23	항	
47	DLA Land & Maritime Supplier Conference & Exposition	미국	6월중(미정)	육/해병	
48	Land Forces Africa	남아공	7월중(미정)	방산/보안	
49	Annual CBRN Defense Conference	미국	7월중(미정)	화생 방	
50	Inamarine	인도네시아	8.25 <sup>~</sup> 27	해상	
51	MSPO	폴란드	9월중(미정)	육/해/공	
52	Russia Army Expo	러시아	9월중(미정)	육상	
53	BALTEXPO	불가리아	9.6~8	방산/해상	
54	Aerospace Defense Summit	대만	9.16 <sup>~</sup> 18	항공	
55	International Armoured Vehicles	미국	9월중(미정)	방산	
56	Pacific	미국	9월중(미정)	해상	
57	Air & Missile Defence India	인도	9월중(미정)	유도	
58	Marine Military Expo - Modern Day Marine	미국	9월중(미정)	해병	
59	FSI Exhibition	노르웨이	9월중(미정)	방산/보안	
60	MILIPOL PARIS	프랑스	10.19~22	방산/보안	
61	Seoul ADEX	대한민국	10.19~24	방산/항공	국내
62	BIDEC	바레인	10.25~27	방산	
63	Artillery Technology India	인도	10월중(미정)	통신/정보	
64	Fire Power India	인도	10월중(미정)	화력	
65	Combat Vehicle India	인도	10월중(미정)	지상장비	
66	Integrated Air & Missile Defence	인도	10월중(미정)	유도	
67	Saudi National Security & Risk Prevention Expo	사우디	11월중(미정)	방산/보안	
68	TADTE	대만	11월중(미정)	항공	
69	Dubai Air Show	UAE	11.14~18	항공	
70	Avalon & Australian International Airshow	호주	11.23~28	방산/항공	
71	I/ITSEC	미국	11.29~12.3	훈련/시뮬레이션	
72	Expodefensa	콜롬비아	11.29~12.1	방산/보안	
73	NIDV Exhibition	네덜란드	11월중(미정)	방산	
74	GDA	쿠웨이트	12.7~9	육/해/공	

\* 전시회 개최 여부, 일정은 주최국 및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관(단체관)은 3개社 미만 참여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 ② 해외전시회(KOTRA)

### ②-1 해외전시회 단체(한국관) 참가

- < 지원 대상 >
  - o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 참가 비용>
  - ㅇ 개별 전시회 및 지역별 상이 (정확한 금액 홈페이지 참고)

### < 선정 기준 >

ㅇ 수출실적, 기업경쟁력, 일자리 창출, 전시 적합성, 정책 우대 가점 등 평가

#### < 지원 내용 >

- ㅇ 참가비 : 직접경비(부스 임차료, 전시디자인설치비)의 최대 50% 국고지원
- 운송비 : 1부스당 1CBM 한도 운송비 100% 지원(해상운송, 편도 기준)
- o 행정서비스: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 측 디렉토리 신청 등
- ㅇ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잠재 바이어 리스트. 현장 홍보부스 운영, 사후관리 등
  - \* 미지원 사항 : 출장 항공임, 숙박비 등 체재비, 전시품 반송비, 통역비 등 개별 발생 비용

#### < 신청 방법 >

ㅇ 글로벌 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 사 업무협의 →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 [방산분야 단체 참가 전시회] 미국 워싱턴 D.C 육군전시회(AUSA)



- AUSA는? 매년 10월 경 개최되는 지상군 방산조달 전시회로 AUSA회원만이 참가 가능하며, 세계 10대 무기 생산업체 등 50개국 700개사 참가
- AUSA 한국관은 13회째 개최되며 매년 7~8개사 10개부스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 ②-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 지원 대상 >

- o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중 해외전시회에 독자적 으로 참가하는 기업
  - \* 민간협단체를 통해 개별 전시회에 신청 및 참가 시, 필수 구비서류 제출 경우에 한해 지원

#### < 지원 내용 >

- ㅇ 참가비 : 기업당 연간 최대 1회. 회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기본 지원 내역 : 부스 임차료. 장치비. 1부스당 1CBM 한도 운송비 100% 지원(해상운송, 편도 기준),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비용 등
  - \* 미지원 사항 : 출장 항임, 숙박비 등 체재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등 공일부 항목을 제외한 참가 직접경비 일반

## < 진행 절차 >

- $\circ$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사업 신청  $\rightarrow$  서류 심사평가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교부
  - \* 연 1회 모집

## [FAQ] 한국관 단체참가와 개별참가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한국관 단체참가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중 지정하여(연간 110회 내외)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부스 임차 및 전시 디자인을 공통으로 대행, 지원하는 것이며, 개별참가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시 KOTRA가 부스 임차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등 일부를 비용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 KOTRA 해외전시팀: 전화 (02) 3460-7256 (일반 해외전시회)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방산교역실: 전화 (02) 3460-7807 (미국 워싱턴 D.C 육군전시회 AUSA)

## 라.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합동 워크샵(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 < 개최 주기 >
  - ㅇ 매년(시기 미정)
- < 참가 대상 >
  - (해외) KOTRA 방산선도 무역관 담당자
  - (국내) 방산 보안 관련 기업
- < 행사 내용 >
  - ㅇ 해외 방산시장 여건 소개, 수출 절차 안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사업 소개, 방산시장 동향 및 국가별 수출 전략 세미나 등
- < 신청 방법 >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홈페이지 통해 안내 (관련 기업 에 개별 연락)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획총괄실 : 전화 (02)3460-7306
- 홈페이지: kotra.or.kr / kodits.kotra.or.kr

## 4-2. 수출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 가. 수출품 정부인증제도(DQ마크)(방위사업청)

○ 방산 분야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수출 확대를 지워하는 제도

### < 관련 근거 >

- o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 물자등의 수출지원)
- 「DQ마크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지원 대상 >

- ㅇ 대상 기업 : 방산물자 등과 군수품을 수출하고자 기업
- 대상 품목: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군수품 등(완제품, 부품 등) \* 인증대상 제외품목: 최근 2년 이내 중대 하자가 발생한 품목, 전체·핵심부품 일 체가 수입품인 품목, 구매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등

#### < DQ인증 시 지원내용 >

- ㅇ 절충교역 협상 방안 우선추천, 전시회 참가비 우선지원
- ㅇ 인증제품 홍보물 제작 및 해외 배포 지원
- 우수 방산 제품으로 국·영문 홍보사이트 등재 등

## < 신청 방법 >

- 접수 기간 : 연중 수시 접수(상/하반기 2회)
- ㅇ 신청 방법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 국방기술품질원(인증기관) 국방인증실로 신청
- 제출 서류: DQ마크 인증신청서, 대표자 서약서, 기타 신청서류
- ㅇ 처리 기간 : 인증신청에서 심사 완료까지 약 4개월 소요

## < 수수료 >

○ 최초 신청 시 심사 수수료 30만원(정기 심사 및 갱신심사비용 없음)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02) 2079-6367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인증실: 전화 (055) 751-5734

## 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방위사업청)

ㅇ 방산 수출 촉진을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개발된 우수 무기 체계의 신속한 개조/개량 및 업체주도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 관련 규정 >

ㅇ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

#### < 지원 대상 >

- ㅇ 대상 과제 : 수출용 개조를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로 아래 요건을 충족
-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 정부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체계개발 중이거나 체계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 ㅇ 대상 기업 : 방산 업체 및 일반 업체 중 아래 요건 충족 기업
- 해당 무기체계의 국내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국내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 국내 계약체결 실적은 없으나,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개발 업체
- 국내 계약체결 실적은 없으나.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된 업체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신청요건 등 부적합기업은 지원 불가함

## < 지원 내용('21년) >

구분	개발기간	정부지원	비고
보조금 지원	최대 3년 지원 3년간 최대 100억원 75% 이내		보조금과 방산육성자금 중
방산육성자금	이자 차액 (지원 한도 및 출임	당한파영자급 중 택1	

\* 대/중견/중소기업 규모별 지원액 차등(50~75%) 및 민간부담금액 중 현금 부담 비율 10~15%. 지원 규모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신청 방법 >

ㅇ 연초(1분기) 사업 공고 시 국방기술품질원 부품개발규격팀으로 신청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 (02) 2079-6362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전화 (055) 751-5801

## 다.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방위사업청)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및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를 선정 후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

#### < 관련 규정 >

- ㅇ 「방위사업법」 제11조,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10조,
- ㅇ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3조 |

## < 지원 대상 >

- 무기체계 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함(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 과제 공고 시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 명시

#### ※ 핵심부품이란?

-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 발휘에 필수적인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부품
  - 국내에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부품
  - 지속적으로 소요가 제기되나 초기 비용이 높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품
  - 국산화 여부가 무기체계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 ※ 국산화란?

•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 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

## < 지원 내용 >

- 무기체계 핵심부품 중에서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과제 및 개발주관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 비중 일부를 지원, 과제 당 최장 5년 이내 의 개발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총개발비의 50~75% 이내 지원
- 개발 주관기업에는 기술·경영 컨설팅 등 기술지원과 성공 시 수의 계약권 및 수입 가격 인정(5년),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 사업 절차 >

사업절차	세부내용
소요제기	·소요제기: 기품원,IPT,방진회,국과연,업체/연중 수시 ·접 수 : 기품원
개발과제 승인/공고	·과제승인 : 방사청(방위산업진흥국) ·공 고 : 30일 이상 / 방사청, 기품원 홈페이지 및 관보
주관기업선정, 협약체결, 자금관리	·평 가 : 서면, 대면, 현장평가 / 방사청기품원 ·승인/협약 : 방사청(방위산업진흥국) / 기품원↔업체 ·자금관리 : 기품원에서연도별로 개발비 지급
시험평가	·개발시험: 개발관리기관 ·운용시험: (필요시)소요군, (용역계약)기품원, 국과연, 체계업체
최종평가, 국산화 인증심사	·최종보고서 및 현장평가 : 기품원 ·(최종평가 결과 "성공"시) 군사용 적합판정및 국산화 인증 심의
국방규격화	·방위사업청심의 및 제·개정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사후관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 기품원 ·사후관리(완료현황 종합관리, 기술료 징수 등)

# < 참가 신청 >

○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compas.dtaq.re.kr)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전화 (02) 2079-6442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전화 (055) 751-5865

### 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방위사업청)

○ 방산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 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 관련 규정 >

ㅇ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 규정」

### < 지원 대상 >

- ㅇ 개발과제
- 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기술 / 부품/ SW/ 제품 개발
- 이 대상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 이상
- 기술 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청 인증된(기술 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또는 수출유망중소) 기업

# < 지원 내용 >

- 최대 3년,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 연간 최대 7억
- ㅇ 자금지원 범위
- 기술개발 : 소요 비용의 75% 이내(시험평가비 2,000만원 이내)
- 시장개척 : 소요 비용의 60% 이내
  - \* 전시회 단독부스 설치, 홍보물 제작, 홍보 매체 계약, 컨설팅 등
- 개발 성공 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0조

# < 신청·접수 >

- ㅇ 매년 초 국방기술품질원(수출개발사업팀)으로 신청
- '21년 총 4~5개 지원대상기업 선정 예정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전화(02) 2079-6442
-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 전화 (055) 751-5865

### 마. 방산 육성 및 수출지원자금 융자(방위사업청)

ㅇ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비용을 유치하여 방산 업체 및 방산 관련 참여업체에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이차)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

### < 관련 근거 >

- 「방위사업법」 제38조(자금융자)
- ㅇ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 규정」

### < 자금융자 종류 >

○ 방산물자 등의 수출(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 시제업체), 국산화(국산화개발승인을 받은 사업), 원자재 비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원자재 비축 비용). 유휴설비 유지(방 산업체의 방산 전용 유휴시설), 방산 시설 설치 및 방산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 < 지원 대상 >

- ㅇ 방산업체 및 방산 관련 참여업체
-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국산화
  - · 핵심기술 · 부품개발. 방산물자 등 수출 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 >

지원분야	융자기간	업체부담 금리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국산화, 원자재비축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업대출평균금리가 4% 이상인 경우
방산시설〈중소 방산업체만〉, 방산업체 운영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대기업 : 2% / 중소기업 : 0.5% - 기업대출평균금리가 4% 미만인 경우
유휴시설 유지	7년 이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50% * 중소기업 : 기업대출평균금리의 12.5%
방산물자 등 수출	조건부 5년 이내	ex) 3.6%→ 대기업(1.8%), 중소(0.45%) 부턴

# < 신청 방법 >

- 사업 공고(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워 등) 확인 후 신청서류 접수
  - \* 대출취급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전화 (02)2079-6446

# 바. 방산 수출 전문인력양성(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방산 관련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분야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 관련 근거 >

- ㅇ 「고용보험법」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 지원 대상 >

ㅇ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방산, 일반 모두 가능)

### < 지원 내용 >

- ㅇ 교육비용 전액 국가지원 (무상 참가)
- ㅇ 교육 과정 : 무기체계 원리 등 20개 과정

교육과정	정원	기간	횟수
방위산업기본, 방산원가관리 초급/중급, 방산계약 실무	30명	2일	5회
프로젝트관리(PM), 종합군수지원(ILS), 국방표준화	30명	2일	4회
무기체계 원리, 연구개발 관리	30명	2일	3회
국방품질보증 실무, 체계공학(SE), 분석평가 업무, 방산시험평가, 국외구매 사업관리	25명	2일	4회
방산수출전문, 방산보안실무,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25명	2일	2회
방산경영관리	25명	2일	1회
상호운용성 및 S/W개발관리	20명	2일	2회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20명	2일	1회

# < 신청 · 접수 >

○ 신청 방법 : 협약체결 후 교육 참여

ㅇ 협약 기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ㅇ 제출 서류 : 협약서 및 일반현황

\* 작성 양식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http://edu.kdia.or.kr) 참조



### 문 의 처

•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교육센터 : 전화 (02) 3270-6081

• 홈페이지: edu.kdia.or.kr

# 사.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KOTRA)

o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발굴, R&D자금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국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밸류 체인(GVC)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 < 대상기업 >

o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재부품 분야 중소·중견기업

### < 지원내용 >

- ① 수출 상담 지원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ㅇ 국내외 권역별 수요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 상담회(GP JAPAN, GP CHINA, GP ASIA, GP EUROPE, GP USA 등), 국내(혁신 기술 상담회, GP KOREA) 등
  -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공장방문, 심층 상담 등(연중 수시)
  - 방산-일반물자 절충교역 관련 글로벌 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 (10-2. 다. 참고)
  - $\circ$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발굴  $\rightarrow$  사업 공고  $\rightarrow$  국내기업 신청  $\rightarrow$  바이어 시장성 평가  $\rightarrow$  상담회 실시  $\rightarrow$  제휴 및 매칭 지원  $\rightarrow$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

# ② R&D 자금지원

- o 해외수요처로부터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아 최종 개발 협력이 확정된 국내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로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워
  - \* 지원 규모 : 5억원 이내 (2년간 1년 최대 2.5억원)
- ㅇ 중기부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직접 신청
  - $\star$  홈페이지  $\rightarrow$  정보마당  $\rightarrow$  사업 공고  $\rightarrow$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해외수요처
  - \* 공고 시기: 1월, 3월, 5월 공고

### ※ 사업추진 절차별 수행기관의 역할

(KOTRA) 진위여부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적합성평가, 서류심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공고 및 접수, 대면 평가, 협약체결, 자금지원 사후관리

# ③ 교육 훈련 지원

-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술·생산방식·품질관리 등 교육 훈련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해외 글로벌기업의 요구수준 충족과 국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도 및 교육 훈련을 지워
- 글로벌 표준 품질교육(AIAG Core Tools Package), 글로벌 공급망 관리교육(MMOG/LE), 글로벌 항공 인증 교육(NADCAP), 글로벌 전문가 활용 기술 향상 교육(Pre-Screening Closing), 일본 퇴직 기술 전문가 JSD 교육(Japan Sourcing Desk) 등 진행

### 문 의 처

- (상담회)
  - 일반GP: KOTRA 소재부품팀: 전화 (02) 3460-7654방산GP: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획총괄실
    - : 전화 (02) 3460-7813
- (R&D자금)
  - KOTRA 소재부품팀: 전화 (02) 3460-7634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화 (02) 368-871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화 (042) 388-0711
- (교육)
  - KOTRA 소재부품팀: 전화 (02) 3460-7634

# 아. 수출 바우처 사업(KOTRA)

- < 대상 기업 >
  - ㅇ 수출 바우처 사업(12개 사업) 참여기업
- < 수행 시기 >
- ㅇ 사업별 모집, 공고 및 선정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사업 진행 < 추진 방식 >
  - o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지원

### < 지원 내용 >

ㅇ "수출 준비에서 해외 진출까지" 수출에 필요한 모든 마케팅 프로그램 을 종합적으로 지원 (12개 분야, 7,000여개의 서비스)

대분류	이용 가능 서비스 예시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CI 및 BI개발, 온/오프라인 제품 매뉴얼 제작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 /세미나/제품시연회
조사/일반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파트너·비이어·원부자째공급선 발굴조사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조사 및 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현지 클레임 해결자원
역량 강화 교육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통번역	계약/법률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번역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 키탈로그,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디자인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특허/지재권/시험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 수출IP 전략 컨설팅

# < 참가 방법 >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또는 www.수출바우처.com) 온라인 접수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개별 사업 신청(연중 2회 사업 공고 예정)

# < 진행 절차 >

○ 사업 참가 신청(참여기업) → 기업 선정 및 기업 분담금 납부(참여기업)
 → 바우처 발급(운영기관) → 메뉴판 내 지원사업 선택(참여기업) →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진행(수행기관) → 바우처 정산(운영기관)

운영기관	사업명	지원대상
KOTRA	수출 첫걸음 지원	· 전년도 수출 전무 중소·중견기업 · 수출중단기업
	월드 챔프 육성	· (Pre 월드챔프)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 · (Post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수출 도약 중견기업 육성	· 매출액 1조원 미만이며 수출액(실적)이 있는 중견기업 중 5천만불 미만의 수출중견기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 창업 7년 미만 중소·중견기업
T101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 전무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수출초보기업	·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중견기업
2502	수출유망기업	· 수출 10~100만불 미만 중소·중견기업
	수출성장기업	· 수출 100~500만불 미만 중소·중견
산업기술 진흥원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수출 500만불 이상 중소·중견기업(미정)
농수산 식품유통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 농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공사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보호원	해외지재권분쟁예방 수출바우처	·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분 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
해외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해외인증취득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명 및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KOTRA 수출바우처팀 : 전화(02)3460-3425
-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 4-3. 수출역량 확대

# 가.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방위사업청)

ㅇ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 < 관련 근거 >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의 책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경영합리화와 기술 향상)
- ㅇ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규정」

### < 지원 대상 >

ㅇ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 참여 희망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예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 전력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그 밖에 방산 분야 참여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 등

### < 지원 내용 >

- ㅇ 업체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5%
- 0 컨설팅 지원 분야
- (기술)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방안 등
- (경영·행정)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방산물자·업체 지정 및 방산 원가 · 계약 절차 등
- (법률)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 보호 관련 상담, 기술 이전, 방산 수출, 절충교역 등 관련 법률 상담 등

# < 신청 · 접수 >

○ 사업 공고: 매년 1분기 내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



-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전화 (02) 2079-6476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팀: 전화 (02) 3270-6048

### 나. 해외 지사화 사업 (KOTRA)

 KOTRA의 해외무역관 등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 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

### < 대상기업 >

- o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 지원내용 및 참가비 (VAT 포함) >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참가비	비고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 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 법인설립 지원	1년	250~350 만원	지역별 차등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 수출(제휴), 글로벌 벨류체인 진출 지원, 엑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 진출, 품목별 타겟 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지원 서비스, 현지투자지원, 법률 자문	1년	665~ 1,015만원	지역별 차등

- \* 주요 지원 내용 중 최대 1~3개 항목 선택하여 집중지원(확장단계는 최대 1개 항목)
- \*\* 2019년 일부 지역 참가비 인상 예정, 참가비 내역은 지사화 사업 홈페이지 참조 (www.exportvoucher.com/jisahwa)
  - 지원 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지원 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지원

# < 진행 절차 >

- ㅇ 매년 (상/하반기) 2회 신청 접수
- ㅇ 국내 및 해외수행기관 평가 후 선정, 서비스 개시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회원기입 후  $\rightarrow$  수출지원기반 활용시업 홈페이지  $\rightarrow$  해외지시회시업  $\rightarrow$  신청하기
  - \* 상기 세부 내역은 추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문 의 처

•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25, 7441

• 중진공 해외사업팀 : 055-751-9680, 9679, 9676

• OKTA 지사화사업팀: 031-927-9218

# 다. 선도기업 육성사업(KOTRA)

- o (일반)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KOTRA-참가기업 간 서비스 로드맵을 공동 수립하고 시장조사, 세일즈 출장 등 정형화된 KOTRA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지 카탈로그 제작. 인증 취득, 개별 로드쇼 개최 등 참가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조달) 무역관별 조달 타겟 시장에 맞는 품목 선정 후, 참여기업 대상 공공조달 베더 및 바이어와의 거래알선.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 < 사업 대상 >

- o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
- < 지원 분야 >
- 조선·해양플랜트, 전력, 기계, 자동차, 전자, 항공, 의료기기, 제약 < 참가 비용 >
  - 기업당 300만원 (VAT포함 연간 유료 회원제)
- < 지원 내용 >
  - ㅇ (일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해외 마케팅 비용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직접 지출
    - \* 지원 대상 예시 :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 해외인증 취득, 방한 바이어 초청 항공임(한도내) 등
    - \* 참가업체에 사업비 직접 지출은 불가, 해외무역관을 통한 지출만 가능
  - 해외시장 조사 등 KOTRA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 포인트 제공
    - \* 유료서비스 예시 :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15만원/항목). 잠재바이어발굴(10만원/개사) 등
  - ㅇ (조달) 참가국 조달시장 조사 및 추진 방향 수립
  - 1천만원 내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비용 지원
  - \* 현지 조달벤더 및 정부 발주기관 초청 제품홍보 세미나, 시연회, 정부 조달벤더 방한 초청 등
  - 조달 벤더와의 상담 주선, 동행 상담 및 현장 지원, 입찰 참여 지원

### 문 의 처

• KOTRA 고객안내센터 : 전화 1600-7119

• 홈페이지: kotra.or.kr

# 05 입찰참여 및 계약추진

# 5-1. 파트너 발굴

국가마다 상이한 입찰 정보 특성 파악 및 영업을 위한 현지 파트너 발굴 방법을 소개합니다.

# 가.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의 역할

- 이 네트워크 구축, 비공개 획득정보 파악
- 입찰 정보가 현지 언어로만 제공되거나 국방부 및 조달관계자와의 면담 협의가 필요한 경우 믿을만한 현지 파트너 발굴
-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 및 활용하여 국방부 내부 정보 획득,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
- ㅇ 입찰 요구사항, 제안서 작성 및 내용 확인
- 제안서 작성, 제안계획에 대한 현지 상황 확인 등
- 입찰 정보의 적격성. 기업의 품목과 맞는 적격 입찰 건인지 여부 등
- ㅇ 현지 벤더 등록, 영업권 획득
- 입찰 정보 입수 및 입찰 참여, 군사용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영업권은 내국인에 대해서만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현지 조력자와 파트너쉽 체결 고려

# 나. 발굴 방법

- ㅇ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마케팅사업 활용
- 국내 초청을 통해 사전 검증된 유력 에이전트 및 바이어 면담을 통해 발굴하는 방법
- 사전 정보교환→면담→현지 방문 및 에이전트의 사업추진 내역을
   확인 후 에이전트와 업무 범위를 조율하고 에이전트쉽 검토
- 대사관(무관) 및 KOTRA 등 정부 네트워크 활용
- 이집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국방 조달 획득정보를 주 한국 또는 주재국 파견된 한국 무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무관을 통한 정보획득, 에이전트 추천이 필요

- ㅇ 조달기관 제공자료 또는 국방백서 등 자료를 활용
- 케냐의 경우 각 조달기관 부서장들은 카테고리별로 공급업체. 계약자. 컨설턴트 목록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하며, 이를 통해 입찰 참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KOTRA 무역관 활용 >

- ① 방산 선도 무역관 활용 (2018년 기준)
  - KOTRA의 127개 무역관 중 29개 무역관을 선도무역관으로 선정하여, 현지 방산 구매수요, 획득 동향 및 절차 조사, 기관접촉을 수행

지 역	무역관명(국가명)
동남아 대양주(7)	라오스(비엔티안),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호주(시드니)
북미(1)	미국(워싱턴)
서남아(3)	방글라데시(다카), 스리랑카(콜롬보), 인도(벵갈루루)
아프리카(2)	남아공(요하네스버그),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유럽(4)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불가리아(소피아), 세르비아(베오그라드), 폴란드(바르샤바)
중남미(6)	멕시코(멕시코시티), 에콰도르(키토), 칠레(산티아고), 콜롬비아(보고타), 파라과이(아순시온), 페루(리마)
중동(7)	사우디(리야드), 오만(무스카트), 요르단(암만), 이스라엘(텔아비브), 이집트(카이로), 카타르(도하), 터키(이스탄불)

- \* KOTRA 본사와의 사업 연관성 및 지역적 중요성 반영하여 지정
- ㅇ 주요 업무
- 방산 구매수요(인콰이어리) 및 구매 프로젝트 확인
- 조달 및 획득 절차 분석 및 안내
- 무역사절단 파견 및 상담회 바이어 모집
- 대사관 및 무관과 협력하여 국방협력 및 제도개선 추진
- 국내 방산 진출기업 애로사항 협의

### 문 의 처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획총괄실: 전화 (02)3460-7813
- 홈페이지: kotra.or.kr / kodits.kotra.or.kr

### ② 조사 서비스 이용

-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조사
- ㅇ 대상기업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기업
- ㅇ 지원내용 및 참가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참가비(VAT 포함)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 지원 (2개월)	33만원(2~3개사) *先입금 후 사전 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 동향/수입 관세율, 경쟁 동향, 수출 동향, 소매가격 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 제도, 생산 동향 등 조사	16만 5천원/1항목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del>수출을</del> 위한 완제품 기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3만원(3~5개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기업 존재 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연간6개시까지 무료 *추가시 건당 1만원 부과
거래선 관심도 조사	국내업체가 보유한(연락처 등 旣확보된) 바이어의 관심 유무	5만 5천원/개사
화상상담	국내업체 관심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지원 - 지역별 차등(최대 2건), 통역 지원 포함	22~44만원/개사

-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 \*\* 바우처 이용 가능 서비스(사업 파트너 연결지원/항목별 시장조사/원부자재공급선 조사)

### ※ 신청절차

① KOTRA 홈페이지 '해외시장 조사사업' 온라인 신청  $\rightarrow$  ② 사전 유선상담(본사)  $\rightarrow$  ③ 해외무역관조사 가능여부 검토(약 9일)  $\rightarrow$  ④ 조사 시작(3주)  $\rightarrow$  ⑤ 결과 보고서 송부(본사)  $\rightarrow$  ⑥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문 의 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02)3460-7337,7213

• 홈페이지: kotra.or.kr

- ③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사업 이용
  - ㅇ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 투자기관. 투자대행기관. 로펌과 상담 주선 등 개별 출장 기업의 해외투자환경조사 활동을 지원
  - 선정기준 : KOTRA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 ㅇ 참가비
  - 일반 서비스 표준 수수료 : 50만원~70만원(VAT별도)
  - 프리미엄 서비스 표준 수수료 : 100만원~140만원(VAT별도)
    - \* 지역별, 바이어 수별 참가비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바람)
    -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 바우처 이용 가능 서비스(최종 수수료의 부가세 10% 제외 금액을 바우처로 사용 가능)
  - 0 지워내용

서비스유형	서비스 안내
일반 서비스	<ul> <li>지원 내역: 기업 요청 별 상담 주선(2~3개사) + 교신 지원(2개월)</li> <li>상담 방법: 무역관이 제공한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li> <li>수수료: 50~70만원(VAT별도)</li> <li>대상기업:통역, 차량 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이동 및 상담 기능 기업</li> </ul>
프리미엄 서비스	<ul> <li>지원 내역: 기업요청 별 상담 주선(2개사 내외) + 상담 지원(통역 및 차량 지원) + 교신 지원(2개월)</li> <li>상담 방법: 무역관 직원이 상담 지원</li> <li>★ 통역: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 등 지원)</li> <li>★ 차량: 관혈도시에서 편도 120km의상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암차료 발생기업 부담</li> <li>수수료: 100~140만원(VAT별도)</li> <li>대상 업: 통역 차량 필요기업 자사화시업 기입 관심기업 투자진출 관심기업</li> </ul>

\* 일반/프리미엄 서비스 : 호텔 예약, 공항출영송 등 기타 사항은 기업이 진행

### ※ 신청절차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 신청(출장 1.5달 전) → ② 해외무역관이 지원 가능 여부 검토(2주 소요) → ③ 지원 가능 시 대고객 견적서 송부 → ④ 출장비 납부 및 출장 준비(2주 소요) → ⑤ 출장 시행
- o 참고 사항: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지역 일부 제한(83개국, 123개 무역관) \* 출장 지원 제외지역(여행금지국): 시리아(다마스커스), 이라크(바그다드),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



### 문 의 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전화 (02)3460-7334

• 홈페이지: kotra.or.kr

- < 한국무역보험공사(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
  - K-sure의 해외 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 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ㅇ 이용 :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 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 0 지원사항
    - 요약보고서 : 무역보험 부보를 위한 국외기업 등록정보, 재무 정보, 주주현황. 관계회사. 국가정보 등(무역보험 부보를 위한 등급책정)
    - Full Report(공사 요약보고서 + 해외조사기관 조사보고서 원본(영문) (추가적인 국외기업정보 확보)
  - 이용금액 : 일반조사 33.000원~99.000원(재무제표 미비 및 신용 불가자 또는 장기 소요 시 비용 할인 및 면제)
  - 이 이용 절차

### 국외기업신용조사 신청 (수출자→K-sure)

K-sure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 로그인 후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 국외기업 상호, 연락처, 주소, 담당자 등 정확한 콘택트 포인트 입력



신용조사기관 앞 신용조사 의뢰 및 조사보고서 접수 (K-sure↔신용조사기관)

국가별 신용조사기관 앞으로 신용조사 의뢰서 발송. 신용 조사 실시 - 약 2~3주간의 현지 신용조사 후 조사보고서 접수3



조사보고서 평가 (K-sure→수출자) 조사보고서 내용을 K-sure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등급 평가 - 평가 완료 후 신청자 이메일로 공사 요약보고서 자동 발송



세금계산서 발행 (K-sure→수출자) 요약보고서 제공 후 익월 1일에 세금계산서 일괄 청구 -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자동 발송



#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전화) 1588-3884

### 다. 에이전트 계약체결 시 주의할 점

- ㅇ 독점 판매권 체결 등 독점계약에는 신중하되, 초기에는 에이전트쉽 (위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등 검증이 필요
- ㅇ 에이전트가 입찰 참여에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나 제한입찰 대상으로 등록된 벤더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 규정 에 따른 부적격자 여부 및 사업 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
- 현지 법상 공공 조달 또는 입찰 참여 제한을 받는지 여부, 처벌 및 유죄판결 관련 사항, 부적격자 등 여부
- 사업자 등록 내역 및 운영 이력 확인
- 또한 보안등급별로 참가에이전트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안등급 자격 소지 등 여부의 확인도 필요
- ㅇ 또한 지식재산권에 보호를 위하여 특허출원 등 관련 사항은 국내기업이 직접 추진하고, 진출 사전에 출원 권한을 가진 대리인 이외에는 상표 등록 및 특허출원을 대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ㅇ 에이전트쉽 계약추진 사전에 에이전트의 역량과 네트워크. 역할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고 업무 범위와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조율 필요

### 체크리스트

- oxdiv 해당 에이전트의 사업범위에 국내기업의 품목이 해당 되는지?
- ☑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 ☑ 현지 조달청에 등록된 기업인지?
- ☑ 성공보수의 지급 여부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 < 주요 국가별 에이전트 이용 유의 사항 >

국가	에이전트 활용필요	유의사항
케냐	0	국방 조달시장 입찰 시 현지 에이전트 지정이 의무화, 수주 활동과 관계없이 비용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계약 시 처음부터 역할 및 계약관계 명확화 필요
방글라데시	0	입찰 시 국방조달청(DQDP)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입찰 기능
베트남	0	국제 조달 참가 시 현지 계약자 또는 하도급 피트너십을 통한 현지 참여 또는 현지회(법인설립 등) 의무화(내국 조달 불가 시 해외기업 참여 기능)
폴란드	Δ	외국인 입찰 참가 요건이 제한적임(현지 영업권 획득 시 내국인으로 제한)
칠레	0	각 군별 등록업체에 한하여 입찰정보제공 및 자격이 주어지므로 기 등록된 에이전트와 협력을 통한 진출이 용이
사우디 아라비아	Δ	입찰참가자격은 대외 공개이며, 대리인 활용도 자유이나 입찰 관련 서류가 모두 이랍어로 작성되어 에이전트 활용이 필요
필리핀	0	입찰 자격 중 기업의 계약이행이력 등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발굴을 위한 에이전트 활용 필요

# 5-2. 해외 입찰 참여

국가마다 다른 해외국방조달의 절차와 특성, 계약추진 시 참고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 가, 조달 절차(일반)

- ㅇ 구매국은 공공조달법 및 국방 조달 원칙 등에 따라 조달 기본원칙을 수립
- o 입찰 종류별로 국가별로 일반경쟁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직접구매), 협상에 의한 입찰, 비경쟁입찰, 경쟁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

### < 조달 절차(예시) >



\* KOTRA무역관 자료 및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종합

### 나. 입찰 준비

### 체크리스트

- ☑ 근거 법령 및 조달 규정
- ☑ 담당 부처는 어디인가?
- ☑ 사전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 ☑ 조달방식 및 프로세스
- ☑ 입찰보증 및 이행보증 필요 여부
- ☑ 절충교역 활용 여부
- ☑ 조달 지원제도
- ☑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및 비용 검토
- ㅇ 근거 법령 및 조달규정 : 어떠한 법령에 따라 조달하는지?
- EU 회원국의 경우 기본원칙은 EU 법률을 따르나.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따라 공공조달시장 진입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 국가에 따라 민감품목(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은 일반조달절차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정보를 상세히 파악 필요
  - \* (예) 노르웨이는 非 EU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군수품은 EU 공공조달지침을 준수 하나 민감품목은 EU 국방조달지침, 노르웨이 국방조달규정(FOSA)에 따름
- 또한 내국인 우선 또는 지역무역협정 가입대상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달 분야 및 참가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상세히 파악
- 이러한 경우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 또는 투자 진출을 통한 사업 참여가 유망함
- ㅇ 관련 부처 : 조달 절차에 관련된 부처는 어디인가?
- 대부분의 국가에서 획득계획 및 조달을 국방부 또는 국방조달청, 각 군별 조달관계부처에서 관할하여 담당
- 그러나 국가에 따라 계획, 조달공고, 심사를 별도 국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며 절충교역에 대한 별도 관리부서가 존재하여 사전 파악 필요

- ㅇ 수입허가 여부
- 국내 수출 허가 이외에도 국가, 획득 규모, 획득 품목에 따라 구매국의 수출입 결정 및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 \* 대규모 무기체계, 무기, 탄약, 폭발물 및 고위험제품 등
- 따라서 국내 수출 허가, 해외 수출허가서(E/L) 획득, 해외 도입 부품에 대한 수출허가서(E/L)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여 계약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ㅇ 조달방식 및 프로세스
- 공개입찰, 수의계약, 지명입찰 등 다양한 조달방식에 대하여, 조달 품목과 국가별 특성이 상이
- 또한 사전등록 절차, 제안서 제출 방법과 준비서류, 전자 입찰체계 사용 방법 등을 사전에 국가별로 확인 필요

< 조달절차 비교 >

(공개입찰 시) 조달업체등록 → 입찰공고 확인 및 입찰안내서 수령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 낙찰자 결정 심사 → 최종 사업 결정 → 계약 및 사후관리

(수의계약 시) 국방부 업체 사전 결정 및 개별접촉(입찰 초청) → 제안요청서 제공(RFQ) → 개별 제안서 접수 → 검토(또는 심사) 및 협상 → 최종 시업 결정 → 계약 및 사후관리

### ㅇ 사전 준비

- (사전등록 절차) 조달 참여 사전 준비단계 또는 방산 품목 취급에 필요한 사전 등록(기업등록, 적격성 증명, 영업권 획득 등) 후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 취득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기업 현황 및 재무제표, 사업자 요건 및 거주 확인, 생산설비 및 기술 조건, 재정 증빙, 합작투자계약 등 증명서 제출 필요
  - \*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벤더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참고 필요

- (합작투자) 또한 입찰 참여가 내국인 및 내국기업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현지 법인설립(사무소, 법인, J/V 등) 또는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계약에 대한 준비 필요
  - (인증) 프로젝트, 국가별로 요구하는 취득 필요 인증 요구가 상이 하여 인증 취득에 대한 사전 대비
  - (제안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국가 또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제한경쟁/수의계약 추진 국가 중 사전에 절차 확인 및 품목 소개를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무기 및 군사 장비와 그 예비분 품목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매기관의 장을 직접 접촉해서 자신들의 제품 /장비/무기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 정부 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제한 규정) 일부 국가의 경우 원산지 제한 규정을 두고 완제품 및 특정 주요 부품에 대한 원산지 제한(참가 범위 차등) 을 시행하고 있어 확인 필요
    - \* (예) 방글라데시의 경우 수송 장비 및 일반 장비, 통신장비 등에 한하여 원산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등급이 변경되므로 사전 파악 필요
  - (입찰 정보 취득 상이) 입찰 정보 공고 시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한 완전 공개, 공고는 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 대하여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입찰요구서 구매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일부 공개. 입찰 정보 및 절차를 비공개하여 개별 확인을 해야 하는 전면 비공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입찰보증 및 이행보증
- 입찰 참여에 대한 확약 등의 이유로 법령에 의거하거나 정책적으로 사전에 입찰보증(통상 프로젝트 비용의 0.5~3% 이내) 후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입찰보증은 입찰 참여자의 귀책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낙찰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보증 해지에 대한 조건도 확인해야 함
- ㅇ 절충교역
- 절충교역이 의무로 규정된 국가(예: 노르웨이 등)
- 절충교역이 의무는 아니나 프로젝트 규모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협상에 반영되는 국가
- 절충교역 미이행 국가(예: 케냐, 멕시코 등)
- 직접 절충교역 및 간접 절충교역 선호 여부 등
- ㅇ 조달 지원제도
- 국제입찰에 대한 참여 가능 여부 및 자국 및 자국 업체 우대 정책
  - \*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입찰 시 자국민 또는 자국 부품 비율 등을 제한하거나. 입찰 분야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필요
  - \*\* 또한 자국민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예: 케냐의 경우 자국민 및 기업에 대하여 입찰 평가 시 20%의 가점을 지급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걸프협력회의(GCC)소속 국가에 대하여 10%까지 가격우선권을 제공)
-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기업. 친환경 제품 우대 등 고려
- ㅇ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 확인
- 비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개조 및 현지화를 위한 기반 시설. 지형 및 자연조건, 전기체계 등 조건 확인
  - \* (예) 전차 및 군용 차량의 수출 시 현지의 지형적 특성(사막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내열성 강화 등)을 판단하여 개조개발 비용에 반영
- 가격에 대한 민감도.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및 인지도. 운송 시간. 관세 및 FTA 체결 여부, 판매 형태
- 단독진출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한 진출 여부,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 이전 관련 사항 등

### 다. 입찰 진행

- ㅇ 제안서 작성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 RFP)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청서류, 거래 규모, 가격조건, 기술 조건 및 세부 사양, 참가자 요건, 입찰 참여 기간, 납품 일정, 제출 방법, 취득 필요 인증, 연락담당자(Point of Contact : POC)를 종합 고려하여 작성
- 현지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이전트 등 현지 파트너와 사전 긴밀한 협의 필요
- 방산물자는 품목에 따라 입찰 참여 사전 준비로 <u>국제입찰 참가 승인</u>\*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 국제입찰 참가 승인이란? 주요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경우, 사업자 서류 및 해당국 구매요구서, 제안서 사본과 수출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포함,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사전 절차가 필요
- ㅇ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등록 여부, 입찰 심사 사전 협의 필요, 기술 테스트 및 프리젠테이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주요 방산 물자등에 대한 <u>수출예비승인</u>\*도 준비
  - \* 수출예비승인이란?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경우 국제입찰 참가 승인 후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 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산기술 통제관실의 사전승인 필요
- ㅇ 제안심사
- 제안심사는 크게 ①서류심사 ②기술 심사 ③가격심사로 구분되며 입찰과 관련 단계별 위원회 구성 또는 관련 부서 심사를 진행
- ① 서류심사는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수치적 오타 및 제출 서류의 편차 발생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제한입찰의 경우 동 정보 검토 후 입찰 초청이 이루어짐)

- ② 기술 심사와 ③가격심사는 국가별로 순서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며. ② 기술 심사의 경우 기술에 대한 역량과 세부 사양. 시스템 규모, 기술 요구사항, 시스템 수명주기 등에 대한 종합 검토
- ③ 가격심사의 경우 국가별로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경쟁입찰 시 최저가격 제시자가 낙찰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 국가의 경우 가격조건을 최우선으로 검토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또한 일부 국가(케냐 등)의 경우 입찰 평가 후 실사(Due diligence) 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악 필요
- ㅇ 낙찰자 선정 및 통보
- 결정 심사 후 낙찰승인 및 입찰보증금 반환과 필요시 계약체결 의사에 대한 서면고지 통보 절차가 있음

# 라. 계약 시 참고할 사항

### 체크리스트

- ☑ 작성 기간 및 기한
- ☑ 작성할 서류
- ☑ 수출 허가, 해외수출 허가서 획득, 기술이전 계약
- ☑ 보증 의무
- ☑ 대금지불 조건
- ☑ 계약이행 및 품질보증
- ☑ 추가 가격조정 및 협상
- ☑ 준거법, 중재조항
- ☑ 절충교역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
- 계약서 작성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낙찰 이후 일정 기간 내 작성해야 하는 경우 사전 준비가 필요함
- ㅇ 계약서 및 작성 서류
- 계약 작성 시 필요한 기본 계약서(일부 국가의 경우 국가계약 양식을 따름), 확약서, 계약 조치사항, 발주자 명령서, 계약 공개 여부 등 확인
- ㅇ 수출 허가, 해외 수출 허가서 획득,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 해외 입찰 계약 시 방산 수출의 국내 절차인 수출 허가, 해외 수출 허가서 획득, 실시권 획득, 기술 이전 계약 등을 함께 추진하여야 함
- ㅇ 보증 의무
- 계약 시 의무 보증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이행보증, 품질보증 등) 보증서 발급 은행 및 비용, 발급 절차도 사전 확인해야 함
  - \* 보증서 발급 은행의 경우 구매국 국책은행 또는 현지 은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증에 대한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 ㅇ 대금지불 조건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선금 지급. 대금결제 방법(신용장 결제. T/T). 분할지급 방법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
- 국방예산 지출의 경우, 해당 국가의 예산 확보 여부와 지출계획을 사전에 파악
- ㅇ 계약이행 및 품질보증
- 품질보증, 이행보증조건 및 지체배상금, 이행 지체 및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처벌 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
- 보증조건과 A/S의 경우 현지 기업과 연계 시, 계약 당사자 또는 현지 파트너와 연계 현지 기업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야 함
- ㅇ 추가 가격조정 및 협상
- 협상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가격조정 가능 범위 및 조건. 추가 협상 발생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
-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공식적 조달 프로세스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협상을 반복하여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금융지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
- ㅇ 준거법 및 중재조항 확인
-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시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거법·언어 및 중재조항 등을 상세히 검토 후 계약

### ※ 준거법, 재판관할, 중재란?

- 준거법(Governing Law)
  - 준거법조항은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에 관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계약서에 적용할 준거법은 보통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하며, 이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각 국가의 준거법 결정원칙 및 기준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준거법 결정이 어렵고,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결과 예측이 어려움
  - 재판관할(관할권, Jurisdiction)
  - 각각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와 관련된 조항으로, 미리 소송을 제기할 법원국을 정해두는 전속적 관할합의와, 소송을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기하여도 무방한 비전속적 관할합의로 구분됨
  - 어떤 법을 정하고, 어떤 법원에서 분쟁을 다룰 것인가를 계약서에서 정함으로써, 추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방법과 소요시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통 관할법원을 정해두고, 준거법을 일치시켜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음
  - □ 계약당사자 각각이 자신에게 익숙한 자국법을 주장할 경우, 제3국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도 있으며, 관할권 고려시에는 ① 계약 당사자들의 주된 거소 ② 계약과 거래에 대한 협상이 주로 일어난 곳 ③ 거래가 '이루어진 곳' ④ '분쟁이 발생한 곳', 즉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위치하고 있는 곳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필요
  - 분쟁해결 조항 및 중재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최초 결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항소나 상고가 없음. 단, 중재합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관련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한국의 담당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임)
- ㅇ 절충교역 이행계획의 검토
- 절충교역 이행 의무 조건을 협상 시 고려하여 계약사항에 반영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사업성 검토 필요
- ㅇ 국내 수출 허가 준비 및 행정절차 준수
- 국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반영 필요 조항 등의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출 허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

### ※ 방산물자 등 수출계약 시 방위사업관리규정의 반영

- ㅇ 내용 :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 군용물자품목의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수출허가 등 국내 행정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ㅇ 관련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물자품목의 수출계약)

### ㅇ 공통 참고사항

- 가. 이 계약은 수출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따른다.
- 나. 이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발효·수정·연장되지 않는다.
- 다. 이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 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 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 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
- 마.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 및 기술의 경우 구매국 주재 대사관, 파견 무관 또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 를 서류 등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바. 다. 라목 및 2호의 가목 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 ○ 국방과학기술시 추가 참고할 사항

- 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가 자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기타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생산수량 제한
  - (2) 이전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 제한: 연구용·생산용·국방목적 등
  - (3) 개량기술의 한국에 무상제공
  - ※ 단,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일부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반영 가능

### 마. 사후관리

- 국가별로 계약이행관리가 상이하나, 복잡하고 특수한 조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능시험, 납품 검수 및 계약종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 필요
- 수출 허가 품목 사후 허가 확인제도(사후 허가 및 최종 사용 확인) 등 수출통제 특정 무기류(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및 절차 확인
  - \* 바세나르체제Initial Elements 부속서3의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

### ※ 방산수출 사후확인 제도란?

ㅇ 내용 :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시 운송수단, 안전대책을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수출허가 여부 결정

ㅇ 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6조

제196조(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및 사후확인)

-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 구매국 도착까지의 운송 수단
- 2. 구매국의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
- 3. 구매국 정부의 군사 물자,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보유 여부 등
- ②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시 계약 단위별 허가와 별도로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출통관 전 건별로 수량 및 품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 ③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를 수출 할 때 구매국 주재 대사관 또는 파견 무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 수출 허가 품목 사후 허가 확인 >



ㅇ 문의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ㅇ 또한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방산 수출 이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고려

### ※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제도란 ?

- ㅇ 내용 : 국내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구매국을 대상으로 군수 물자(관련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등 후속군수지원 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
- ㅇ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수출지원 등),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
- ㅇ 지원 내용
  - 요청 대상 :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
  - 대상 품목 : 기업이 수출한 방산물자 등 - 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
    - 1. 연구 및 설계반영
- 2. 표준화 및 호환성
- 3. 정비계획(정비지원)

- 4. 지원장비
- 5. 보급지원(수리부속 등) 6. 군수인력운영

- 7. 군수지원교육
- 8. 기술교범
-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10. 정비 및 보급시설
- 11. 기술자료 관리
- ㅇ 주요 내용
  - 수출업체와 관계 행정기관은 현 지원 능력 및 향후 획득계획을 고려하여 "방산 수출 후속 군수 지원 종합관리 계획서"에 의거 지원 범위, 시기 등을 결정
  - 후속군수지원 이행단계 시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후속군수지원 요소별로 계약서(또는 협정서)를 체결하여 지원
  -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지원업무에 대한 협조 및 관리 감독
- ㅇ 문의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과

### 문 의 처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정부간거래관리실: 전화 (02) 3460-7809
- 홈페이지: kodits.kotra.or.kr

# 5-3. 주요 국가별 조달절차

국가	구분	주요내 <del>용</del>
베트남	조달 프로세스	<ul> <li>○ (일반경쟁입찰) 입찰자 선정 준비(벤더등록)→선정 진행 →서류평가→심사 진행 및 낙찰 결과 통보→계약서 체결</li> <li>○ (지명입찰) 입찰자에 초안 계약서 발송→합의 및 계약서 완성→결재제출→계약서 체결</li> </ul>
	유의사항	<ul> <li>이 입찰 시 관련 인증 및 방위산업참여 적격성 증명서 취득 필요</li> <li>이 자국 기업 우대, 입찰법 상 외국입찰자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형성 의무</li> <li>이 방산 제품의 경우 직접 계약 체결</li> <li>- 국방산업체가 국책/위임 형태로 수행하는 category A 및 방위산업활동 종사 조직 및 개인에 명령 또는 입찰수행하는 category B 리스트로 구분</li> </ul>
폴란드	조달 프로세스	<ul> <li>○ (다수 업체 협상)→예비제안서 및 확인서 등 서류 제출         →협상 초대→최종 제안서 제출 요구→심사→낙찰 통보         및 계약</li> <li>○ (단일업체협상)→협상 초대 및 평가, 조건 만족 시         →예비제안서 제출 초대→심사→낙찰 통보 및 계약</li> </ul>
	유의 사항	<ul> <li>전자입찰 진행</li> <li>외국인 입찰 참가 요건이 제한적임</li> <li>폭발물, 무기, 탄약 및 군사 또는 경찰 목적의 기술 제조 및 거래와 관련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권 획득 필요</li> </ul>
케냐	조달 프로세스	<ul> <li>○ (외국인 참여/일반경쟁입찰) 입찰 준비(조달계획)→입찰 초청 (제한 입찰시 PQ심사)→입찰서 제출 및 접수, 개찰→평가 →낙찰자 통보→계약체결→이행관리</li> <li>○ (직접 조달(수의계약)) 입찰 준비(조달계획)→PQ 심사 및 입찰문서 발행→공급자선정→계약체결→사후관리</li> </ul>
	유의사항	<ul> <li>외국기업은 일반경쟁입찰에 참여가능하나, 이외 입찰 (입찰(PQ요청)은 현지 법인 또는 현지 기업을 통한 간접적 납품만 참여 가능</li> <li>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필요</li> </ul>

국가	구분	주요내용
멕시코	조달 프로세스	<ul> <li>○ 공공계약법령에 따라 공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구분</li> <li>- 국내 입찰(FTA 합의 양허 하한선 이하 금액, 주재국 국적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50% 이상 자국 제품 사용)</li> <li>- FTA 체결국 대상 국제입찰(양허 하한선 이상의 구매사업, 주재국 국적 기업 및 FTA 체결국가)</li> <li>- 개방형 국제입찰(해당 입찰 관련 국내 공급자가 없을시)</li> <li>○ (입찰절차) 입찰공고→입찰 심사(입찰 증인제도)→입찰서류심사/최저가 낙찰→낙찰자 결정 통보</li> </ul>
	유의사항	<ul> <li>FTA 체결국 대상 국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현재 체결 준비국가임</li> <li>사전 조달 업체 등록, 입찰 시 입찰 증인제도에 대한 확인 필요</li> </ul>
	조달 프로세스	○ (입찰절차) 사전등록업체의 제한입찰 참여/개별에이전트를 통한 입찰 참여/서류 제출→제안서 작성→입찰서류심사→ 낙찰 통보
방글라 데시	유의사항	<ul> <li>O 군 연간 획득 계획 등은 대외비로 일반에 비공개, 대외 폐쇄성이 높은 조달분 야의 특징을 지님</li> <li>O 사전 등록된 군 조달청 등록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입찰 참여 가능</li> <li>O 고품질의 물자 조달을 위해 원산지 제한입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제품의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와 특정 부품(예: 엔진)의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 등의 원산지 제한 규정을 운영</li> <li>O 보증조건, A/S를 수행할 현지 기업에 대한 사전협의 필요</li> </ul>
시우디 이버되어	조달 프로세스	<ul> <li>○ (국가계약 기본원칙) 공개입찰 원칙, 직접구매 가능</li> <li>- 직접구매, 공개입찰, 비공개입찰, 국제입찰</li> <li>○ 사업 공지→입찰서류심사→낙찰자 선정→낙찰승인→계약작성</li> <li>○ 전자 입찰체계 없음</li> </ul>
	유의사항	<ul> <li>이 입찰 시 정부 사업 취급을 위한 사전등록 필요</li> <li>이 입찰요구서 구매, 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 에이전트 활용 필요</li> <li>이 무기 및 군사 장비와 그 예비분 품목의 판매를 위해서 해당 구매기관과 접촉하여 설명 및 제안서 제출 필요</li> </ul>

국가	구분	주요내용
알제리	조달 프로세스	<ul> <li>○ (공개입찰 시) 조달 업체 등록→입찰공고 확인 및 입찰 안내서 수령→제안서 작성→제안서 제출→낙찰자 결정 심사→계약 및 사후관리</li> <li>○ (수의계약 시) 국방부 업체 사전 결정 및 개별 접촉→ 장비 요구 성능서 제공→개별 제안서 접수→검토 및 협상→최종 사업 결정(계약관리위원회)</li> </ul>
	유의사항	O 공개입찰은 참여에 제한이 없으나 사전심사 공개입찰은 자격요건 후보자만 참여 가능 O 전자 입찰체계 없음
스페인	조달 프로세스	○ 입찰 사전등록→관보를 통한 입찰공고→(정보 확인) →제안서 제출 및 평가→낙찰 및 계약체결
	유의사항	○ 기본원칙은 EU 조달규정을 따르나 외국인에 대한 비치별성 및 비배제성 원칙 준수로 진출 용이 ○ 입찰기업등록청 사전등록(권장 사항)
이집트	조달 프로세스	<ul> <li>○ (공개입찰) 입찰공고→입찰서류 제출→개찰위원회→ 입찰서류 수령→개찰 절차 진행/입찰샘플 관리→검사 및 검토→평가를 위한 준비→기술평가→의견조정→가격 제안통과 및 가격제안서 개찰→가격 제안 검토→낙찰자 선정→계약체결 통보→계약서 작성</li> <li>○ 무기 구매는 사전에 견적 요청 및 초청에 따라 구체적 기술 사양을 검토한 후 입찰 진행</li> </ul>
	유의사항	<ul> <li>기호 시경호 검포한 무 법호 현황</li> <li>국방 조달 입찰의 경우 해외 각 무관부와 방산 기업등에 RFQ 송부, 입찰 참여 초청장을 송부하여 추진하는 독특한 절차로 진행</li> <li>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해외군 재정보조금 지원을통한 조달을 진행하여 풀패키지 원조와 융자 등 조건을요구하는 경향이 있음</li> <li>25%한도 내에서 계약수량 및 조건변경 가능하여계약체결 이후에도 추가적 요구가 많은 편임</li> </ul>
노르 웨이	조달 프로세스	<ul> <li>○ 획득전략에 따라 군용물자 구매</li> <li>- 국가개발 프로그램, 국제 군비 협력, 지정조달 등</li> <li>○ 조달계획 수립→개념 수립→정의 및 계획→획득→실행 →이익 실현</li> </ul>
	유의사항	O EU 회원국은 아니나 규정 준수 O EU 외 국가에 대한 절충교역 이행이 의무이며, 미 이행시 예측 불가능성 및 사후 대응 미비, 추가 협상 지연 등 발생 가능

\* 출처 : KOTRA 해외무역관 조사내용 및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 재구성

# 5-4.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는 무역서류의 온라인 거래를 통해 무역업계의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입니다.

### <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란? >

- ㅇ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에서부터 외환, 요건 확인, 통관, 물류,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우 개념의 '인터넷 기반 전자무역 플랫폼'
- 3만8천개 수출기업이 uTradehub 이용하여 수출업무를 전자적 처리
- ㅇ 수출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 및 관련 업무 구축 \* 관세청·해수부, 무보·신보·중진공·상의, 시중은행·손보사, 방사청·전략물자관리원 등

### < 서비스 내용 >

대금결제	17개 국내은행과 신용장, 환어음, 송금방식 대금결제 전자문서 연계
적하보험	국내 7개 손해보험사와 적하보험 전자문서 연계
수출보험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 해외신용조사 전자문서 연계
로컬수출	수출기업이 수출용완제품·원부자재를 공급한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
원산지증명	상공회의소와 일반원산지증명, FTA원산지증명 전자문서 연계
전자상거래몰	지마켓, 11번가 등 전자상거래수출몰과 연계⇒ 수출신고 자동화
통관	국내 800개 관세사와 관세청간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전자문서 연계
물류	국내 2,500개 포워더와 수출입 화물 전자문서 연계

# < 이용 절차 >

○ 유트레이드허브 회원가입(약관 동의, 회원 정보) → 이용신청서(업로드) → 가입승인 → 전자무역이용신청(및 은행과 거래약정: 선택) → 서비스 이용

- < 이용 효과 >
- 프로그램구축, 대외 기관 연계 없이 uTradehub 통해 전자무역 이용 가능
- 이용 데이터의 전자무역기반시설 중계·보관·증명 서비스를 안정적 제공
- < 전자무역 서비스 개요 >



# 문 의 처

• KTNET 고객지원센터: 전화 1566-2119

# < 무역 절차별 전자무역플랫폼 활용 현황 >

절차	이행형	행위	플랫폼	기능
마케팅	온라인 수출 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		B2B 마켓플레이스 3대 플랫폼 등	상품소개, 수출기업-바이어 매칭
수출계약	해외신용조사 수출보험	수출기업 <del>- 무</del> 역보험공사	전자무역포탈 (uTH)	해외신용조사 단기수출보험
<b>↓</b>	수출신용장 내도	외국은행→국내은행 →수출기업	전자무역포탈 (uTH)	신용장 통지 신용장 양도
수출물품 확보	대국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수출기업→은행→ 수출기업→공급기업	전자무역포탈 (uTH)	내국신용장 개설.통지 구매확인서 신청 발급 수출신고필증
<b>↓</b>	Local 결제	수출기업→은행→ 공급업체	전자무역포탈 (uTH)	판매대금추심매입
내륙운송		수출기업→포워더	물류포탈(uLH)	
↓ 통관 ↓	수출요건확인	수출기업→확인기관 (전략물자관리원등) 수출기업(관세시 <del>)─세</del> 관	- 전자문서중계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적	적하목록신고 출항신고 선하증권 발급	선사→관세청 선사→해수부 선사→포워더	물류포탈(uLH) -	적하목록 취합・신고 출항신고 -
	적하보험 부보	수출기업→보험사	전자무역포탈(uTH)	보험가입신청
<b></b>		A = 7101 O = 11		
대금회수 —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수출기업→은행 (O/A,추심,지급지시) 은행→수출기업 (입금통지)	전자무역포탈 (uTH)	수출신고필증 계약서(근거) 환어음(관련서류) B/L(관련서류)
*-1015	원산지 증명발급	수출기업→대한상 의	FTA KOREA (uTH와 링크)	수출신고필증
추가업무	실적증명서 발급	수출기업→관세청 간접수출기업→발 급기관(KTNET,은행)	전자문서중계 전자무역포탈(uTH)	세금계산서 입금증빙서류

# 06 정부간 판매제도 활용

### 6-1. 정부간 거래란?

구매국이 방산물자 및 일반물자의 안정적인 획득과 투명한 조달을 위하여 정부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기업 추천(중개)을 요청할 경우, 정부간 거래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을 지원합니다.

#### < 정부간 거래란? >

- 방위사업청 또는 KOTRA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내업체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으로, '계약'과 '중개' 방식으로 구분
- (정부간 계약) KOTRA가 국내업체와 함께 또는 국내업체를 대신하여 해외 정부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업체선정→ KOTRA와 업체 간 계약 → 수출계약(G2G)

(정부간 중개) 방산 협력, 품질보증 등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방위사업청이 구매국 정부와 판매협약을 체결한 후 국내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되, 국내업체가 구매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방산물자에 한정하여 운영

#### 방위사업청-구매국 간 협약체결 → 업체추천 → 수출계약(구매국-업체)(G2B)

### < 법적 근거 >

- 대통령훈령 제258호, 「방위산업물자 등의 교역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항 및 제5항
- 대통령훈령 제260호,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4조(정부간거래의 절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제8항 등

### 6-2. 정부간 계약(G2G) 활용

정부간 계약은 KOTRA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국내기업과 함께 당사자 지위를 가지고 방산물자 및 일반물자 수출 판매 시 구매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동 제도를 통해, 계약 투명성과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국 간 포괄적 방산 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 < 개 념 >

○ 외국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G2G 전담 기관인 KOTRA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국내기업과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자 및 용역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계약

#### < 요 건 >



#### 나. 정부간 계약(G2G) 체결 세부절차

< 체결 절차 >



- ① 구매국 정부의 구매 의사 확인 및 거래요청서 접수
  - 수출기업, 현지 대사관, 무역관 등을 통해 정부간거래 정보수집
  -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G2G 계약 희망 여부, 방산물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상대방 정부의 의향을 파악
  - 공사, 상대국 정부의 G2G 거래요청서·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 RFP) 또는 구매의향서(Letter of Intent : LOI) 접수
    - \* 무역관 정보 발굴 후 G2G 구매 의사 확인 및 관련 서류 접수 단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프로젝트 관리 필요
  - 구매국의 WTO GPA 협약, 조달 챕터 포함 FTA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하며, 구속 및 제한되는 협약사항 여부와 방산물자 조달 시의 예외 사항 등을 확인
- ② G2G 거래지원 신청
  - 국내기업은 KOTRA에 거래신청서, 프로젝트 개요, 납세증명서, 이행 능력 보고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제출
- ③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기업 선정 및 추천
  - 보통 구매국 정부의 의향서에 수출기업명이 명시되며, 해당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동 기업의 수출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최종 추천
    - \*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 지침에 근거,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추천

- (수출능력이행평가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문 컨설팅기관(회계법인)이 분석한 수출기업의 수출이행 능력 평가자료를 토대로 심의
- ④ 구매국 정부와 협상을 통한 계약서 작성
- 구매국 조달법 등 적용법령 확인, 제안서 작성 및 검토 (자체 검토. 법무법인 검토요청 등) 후 구매국 정부에 제출
  - \* 제안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진행 정도에 따라 생략 가능
- '구매국 정부-KOTRA-이행기업'의 3자 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조건 협상
  - \* 협상 시 보통 구매국 정부를 방문하여 협상하는 '협상단 파견' 방식으로 구매국 정부 관계자 및 KOTRA, 기업이 참석하여 계약조건 협의
- 국가별 계약 특성 및 절차를 파악하여 계약조건 및 초안 검토
- 해당국의 절차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수정
- ⑤ 사업심의 및 계약승인
  - KOTRA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상정·검토
  - 방산물자 G2G거래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 ⑥ 이행약정 및 G2G계약 체결
  - 공사-수출기업 간 이행사항 규정을 위한 이행약정 체결
    - \* 공사의 기업 이행사항 점검, 수출계약 관련 공사 면책 확인, 기업의 수출이행 확약, 관련 비용부담 의무 등을 명시
  -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보증 또는 수출보증보험 가입
    - \* 구매국 정부 요청 사항 충족 및 리스크 회피를 위한 필수 조치
  - G2G계약 체결
    - \* 구매국 정부, 이행기업, 공사의 계약 서명자 확인 및 계약체결 일자·장소를 확정하여 계약식 개최

- ⑦ 계약이행 관리
  - 계약에 근거, 필요시 사업 착수 회의 및 이행관리위원회 개최 (현안점검회의) 개최
  - 기업으로부터 사업 이행 현황 보고서 수령 및 진행현황 점검
- ⑧ 계약 완료 보고
  - 계약에 근거, 필요시 사업 종결 회의 개최



### 다. 기업 유의사항

- ㅇ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행능력평가 수행, 계약서 법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발생 비용은 기업이 부담함
- ㅇ 구매국 정부의 거래 의사 확인 이후 최종 계약을 하기까지 공식 절차 이행을 위한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진행

#### <FAQ> 정부간 계약 추진시 유의사항

- 1. 정부간 거래 사업 파트너 발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에서 진행하는 사절단 및 바이어 초청행사(KODAS 등)에 참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사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됩니다.
- 2. G2G 거래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관련 프로젝트 개요와 함께 G2G거래지원신청서, 납세증명서(국세청 발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수출계약이행능력 보고서(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그 외 공사 양식을 작성하여 공사로 접수합니다.
- 3. 이행능력평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 이행능력평가보고서 작성(약 3-4주) 뿐만 아니라. 협상 최종 타결 후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개최 등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프로젝트 진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정부간거래관리실: 전화 (02) 3460-7809
- 홈페이지: kodits.kotra.or.kr

# 07 수출허가 및 행정절차

### 7-1. 국내 수출허가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전략물자,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허가 업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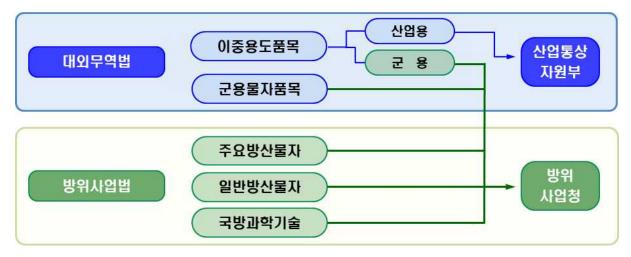
#### < 관련 근거 >

- ○「방위사업법」제57조 (수출허가 등)
- ○「대외무역법」제19조 (전략물자 고시 및 수출 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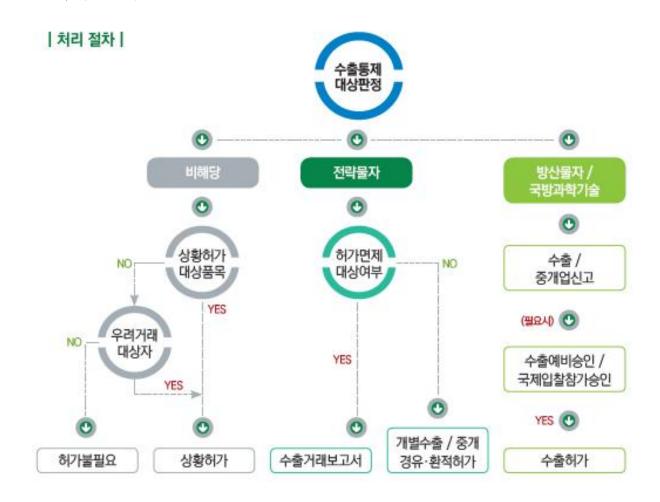
### < 수출 허가 대상품목>

구 분	관련 규정
전략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물품 *「전략물자수출입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
방산물자	<ul> <li>방위사업청장이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해 지정한 물자</li> <li>*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방산물자</li> </ul>
국방과학 기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의 정의에 의한 국방과학기술

### < 수출 허가 기관>



#### < 허가 절차 >



### < 상황허가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 ㅇ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수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 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 ㅇ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에서 확인 가능

### < 수출예비승인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기승인)

- ㅇ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 상담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함.
-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 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 ㅇ 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 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 국제입찰참가승인 >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기승인)

- ㅇ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받아야 함.
- ㅇ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 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 ㅇ 국제입찰 참가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 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함
  - 다만 당해 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수출 허가 > 전략물자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시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 ㅇ 제출 서류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공통	<ul> <li>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li> <li>최종사용자 증명서</li> <li>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li> </ul>	1000
기타	<ul> <li>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li> <li>최종수하인 진술서</li> <li>최종사용자의 영업여부 확인가능한 확인서</li> </ul>	<ul> <li>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li> <li>수출시 외국정부의 허가 필요시 해당 국가의 허가서</li> <li>수출시 국내외 파급효과 및 납품일정</li> </ul>

### ○ 관련 규정 및 서식

구분	관련 법령(규정)	각종 서식
	○ 「방위사업법」제57조/시행령 제68조/ 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방산 물자 및	* 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법령] 에서 확인 가능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국방 과학 기술	<ul> <li>○ 「방위사업관리규정」제5편 제4장 제2절</li> <li>* 청 홈페이지(www.dapa.go.kr)</li> <li>[업무·정책]-[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li> <li>에서 확인 가능</li> </ul>	<ul> <li>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li> <li>[회원서비스]-[자료실]-[민원서식 목록]</li> </ul>
<del>군용</del> 물자 품목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8조~제27조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국내관련법령]-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확인 가능	<ul> <li>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li> <li>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li> <li>[알림/정보마당]-[자료실]-[민원서식]</li> </ul>

※ 수출하가 관련 법령(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시스템, 수기, FAX 활용 등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http://www.d4b.go.kr)
-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

#### < 항목별 허가사항 >

	수출업·중개업 신고	국제입찰 참가승인	수출 예비승인	수출허가
주요방산물자	0	0	0	0
일반방산물자	0			0
국방과학기술	0	0	0	0
전략물자				0

#### \* 불법수출 시 처벌규정(주의 사항)

- ㅇ 원칙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은 모두에게 금지 ⇨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금지 해제
- 방산수출 위반 시 군용물자품목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의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 가능
- 대외무역법 제1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교육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 에게 보고

####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대외무역법 제 31조)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 제한
-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

#### 벌칙(대외무역법 제53조~제59조)

• 관련 규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 3년 이내의 무역 제한 처분

#### 국제수출통제체제 제재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주요국(미국 등)의 우려거래 대상자 리스트(Denial List)로 분류 국제적 거래 제한 가능

#### 벌칙(방위사업법 제 62조)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출처 : 방위사업청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방산수출입업무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전화(02)2079-6827~8

### 7-2. 기술료 혐의와 실시권 및 기술이전계약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국외 수출 시 사전에 기술보유기관과 기술료 사전협의를 통 하여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관련 근거 >

- ㅇ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ㅇ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 이전).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등). 제13조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 < 기술료 산정 절차 및 기준 >

- ㅇ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 에 방위사업청,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등 기술 보유기관과 기술료 협상 및 기술 이전계약이 필요
  -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시 업체가 기술 보유 기관과 기술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제출(감면여부포함)
- ㅇ 또한,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기술료 산정과 별도로 일정 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 필요
- o 기술료의 산정과 감면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관련 부서의 검토하 에 면제 및 협의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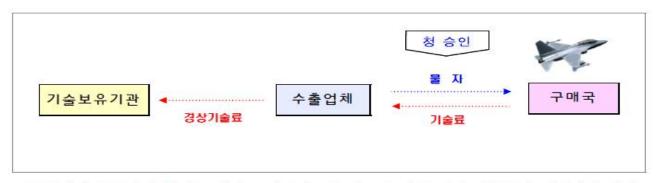
#### ※ 기술료와 실시권

#### ㅇ 기술료

- 기술이전 및 실시권 획득 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시 국내 순 조달가격의 2%
  - \* 국내 순 조달가격 : 국내 조달가격-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수입품의 물자대, 수입제세, 기타 수 입부대경비 합산금액)-당해 무기체계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해외판매촉진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무기체계 대여료, 수리수선비, 재조립비, 운반비, 훈련요원 지급경비, 보험료 등)
  - \* 순수출가격 : 판매가격(수출시장가격)-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당해 무기체계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 \* 순판매가격: 판매가격(일반시중가격 또는 시장가격)-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당해 무기체계 수출
- 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 - 기술 이전 및 실시권 획득기술을 이용한 민수품 생산 시 : 착수기본료 또는
- 경상기술료(제품단위당 순 판매가격의 2%)
- ㅇ 실시권 : 해당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에 관한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실시권(기술료 산정 등 제반 절차 진행 후 허락 여부 결정)
- ㅇ 실시권 사용 시에는 방위사업청장 등과의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실시하여야 함 (해외 출원 시 주의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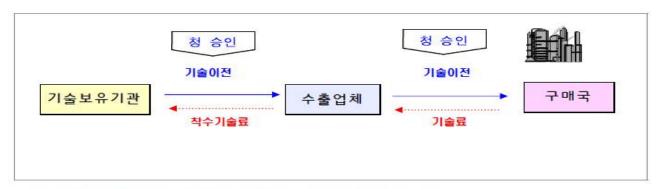
### < 수출유형별 기술료 산정>

### ① 물자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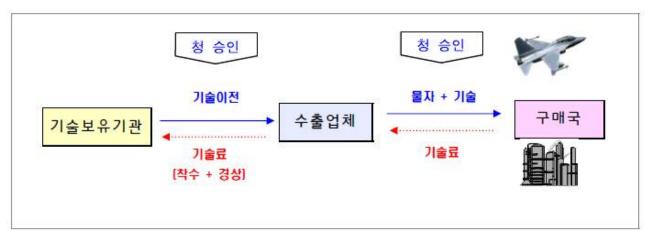
\* 품목단위 물품만 수출되는 형태로 기술자료묶음(TDP) 제외되며, 대부분의 방산수출 형태

### ② 기술 수출



\* 기술자료(개발보고서, 규격서, 도면, S/W 등)만 수출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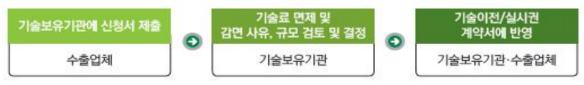
### ③ 물자+기술 수출



\* 최근 물자 및 현지 생산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자료가 포함된 형태의 방산수출 증가

### < 기술료 면제 및 감면제도 >

- ㅇ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면제 및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 수출 확대를 도모 하기 위한 제도
- \* 관련 근거 : 방위사업청 고시
- ㅇ 기술료 면제 사유
- 국방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연구개발 주관 업체 및 협력 업체가 해당 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 상담 또는 국제입찰 참가를 위한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 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 ㅇ 기술료 감면사유
- 국가 간 해당 수출 품목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전력화 계획이 수립된 물자를 직접 수출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구매국에서 동종 품목을 생산. 제작하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수출업체가 동종 품목의 국내 조달 단가 인하를 조건으로 기술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개발한 품목의 경우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활용 촉진, 수출 촉진 등 국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0 지워절차



#### 문 의 처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정책·제도): 전화 (02) 2079-6384

기술심사과(승인): 전화 02) 2079-6832

• 국과연 민군기술진흥원

국방기술사업센터 (신청·접수): 전화 042) 607-6063

### 7-3. 해외 수출허가

외국의 원천기술 및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품목으로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 해외 원천기술 및 부품의 사용에 대한 제조국 수출승인

### < 관련 근거 >

- ㅇ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방산 물자 등의 수출 허가 등)
- ㅇ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4조(외국의 수출허가 및 동의필요 품목의 수출)

#### < 외국정부의 수출 승인 >

- ㅇ 국내 수출 허가 요청 시 외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ㅇ 해외 원천기술 및 부품 사용 시 해외 제조국 정부의 수출승인이 필요하며, 수출승인은 해외 부품 제조 및 기술 보유 수출업체가 해당국 정부로 요청하되 수출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출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사전 파악이 중요
- 중동, 인도 등 일부 테러지원국에 대하여는 제3국 수출승인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수입 시 해당 제조업체에 예비 수출 승인을 요청해야 함

### < 취득 절차 >

- o (국내기업) 해외수입자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 작성요청 → 최종 사용자증명서 수령 → (해외 부품 제조 및 기술보유업체) 수출허가서(E/L) 를 취득 후 서류 송부 → (국내기업) 해당 서류를 국내 수출 허가 시 제출
- 미국 수출허가서(E/L) 신청의 경우 해당 국가별로 요청부서 및 기간이 상이하며 미국 국무부와 계약업체(제조사)와의 협조가 필요

#### ※ 미국 수출승인(Export License)이란?

- ㅇ 미국산 무기의 해외 판매 시 미국 정부가 보안상 통제하는 기술 및 품목\*에 대하여 승인권을 발행하여 통제하는 제도로서 미국 방산업체가 외국에 방산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무기수출통제법 (AECA: 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국산 '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 미국산 부품을 포함한 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 미국산 기술 을 이용한 외국산 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에 적용
- ㅇ 허가 발급 절차는 미국무부의 규정인 국제무기교역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에 따라 이루어짐
  - \* 수출행정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국제무기교역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ITAR))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지며 미국무기목록 (U.S. Munition List(USML)) 등의 품목이 제한됨
- ㅇ 관련 부서 :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DDTC), 국방부 국방기술보호청(DTSA)
  - \* DDTC(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 DTSA(Defense Technology Security Administration)

#### < 수출승인 절차 >

- ① 미 방산업체는 물자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미국무기목록 (USML: U.S. Munition List)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 ②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DDTC)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수출면허 신청 \*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무부에 수출면허를 신청제출서류 중 제3국 이전을 위한 표준질의서는 총 15개의 질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으로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기록하여 제출
- ③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에서는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에 통보
- ④ 방위무역관리국의 심사관(Licensing Officer)이 심사 진행 후 면허(Export Licence)를 발급 \* 필요시 국방부 등 타 부처에 업무협조
- < (참고) 미국의 최종사용확인(EUM) 제도 >
- ㅇ 미국 최종 사용 확인제도는 군용품목과 더불어 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도 전 세계 수출국가를 대상 으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 ㅇ 업체가 수출한 방산물자(Defense Articles)등이 적법한\*(Authorized)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美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
  - \* 재수출(re-export), 재판매(re-sales), 기타 처분(other disposition) 등의 행위 금지
- ㅇ Blue Lantern(국무부 DDTC) / Golden Sentru(국방부 DTSA)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Golden Sentru 대상 중 일부품목을 별도로 선정하여 강화된 EUM 실시
  - \* 일부품목을 별도로 선정하여 비정기적으로 현장 확인(Enhanced EUM)도 시행

#### ※ 수출허가서(E/L) 획득에 대한 조사사례

- 미국국방부 산하 방산기술보호청(DTSA)은 기술도용 및 유출 점검 명분으로 비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실사 요청
- 실제로 '18년 초 국내 연구 기관 및 기업을 방문한 사례가 있으며, 기업 유출 및 국산 방산 수출품의 정부 수출허가서(E/L) 승인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
  - 동 기관은 이전에도 핵심부품에 대한 봉인 훼손 등으로 현장실사를 요구한 사례가 있음
- 기업들은 수입 부품 사용에 대한 수출 시 수출허가서(E/L) 취득 필요 여부를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나. 대미동의

- 일부 품목(전차 품목, 군원 품목)에 대해 MOU\*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 가 미국 정부로 수출에 관한 사전동의 필요
  - \* 한국형 전차의 설계 및 개발기관 간 양해각서('78), 방위물자생산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양해각서('89)
    - ㅇ 대미동의 품목은 전차품목 군원(Military Aid)품목 : 총 121품목
    - 전차품목\*1 : 기술료 부과품목(대미동의 필요) ⇒ 39품목
    - 군원품목\*2 : 기술료 면제품목(56품목) /부과품목(26품목) ⇒ 82품목

### < 대미동의 절차 >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D4B→민원 신청→수출입지원→대미동의)
- 제3국 이전을 위한 표준 질의서
- 수입국 표준확인서(Standard Assurance)
- 수출사업 관련 설명자료(수출 품목, 규모, 추진개요, 향후 일정 등)
- 신청 절차



### < 기술료 규모 >

○ 한 · 미 정부 간 체결한 MOU상 기술료(Royalty Fee)는 국내판매가의 8% 부과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전화 (02) 2079-6972
- 홈페이지: www.dapa.go.kr

#### 해외인증, 성능시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등 80

### 8-1. 해외규격인증 취득

#### 해외 규격인증 취득과 관련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 ㅇ 국방 분야 기기 및 부품에 대해서도 수출 시 해외규격인증을 의무로 요구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 필요
  - 군수품의 처리, 수송 및 서비스 환경에서 물리적 및 기능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인증 등
- ㅇ 해외인증 취득 시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많아 사전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수출바우처 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가. 수출바우처 서비스(한국산업기술시험위)

### < 지워내용 >

- ㅇ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워)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 분야 제외

### < 신청 방법 >

- o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 지원 및 선정 후 홈페이지(www. exportvoucher.com)를 통해 해외규격인증분야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이용금액만큼 바우처 비용에서 차감

### ㅇ 지원항목

인증	해당지역 및 국가	서비스 내용
СВ	국제	KTL 시험 및 인증
CE	유럽	KTL 시험 및 DoC 가이드
CoC, SASO, 에너지효율	사우디아라비아	KTL 시험 및 인증
G-Mark	중동 GCC	KTL 시험 및 인증
EAC	라마음EAU5FR	KTL 시험, KTL 공장심사(CIGO23 인정)
ECAS, EQM, 에너지효율	o립에미리트(UAE)	KTL 시험, KTL EQM 공장심사
UkrTEST	우크라이나	KTL 시험(타기관 CB 인정)
SEC	칠레	KTL 시험, 1.5주 이내 인증
IRAM	아르헨티나	KTL 시험(CB/ILAC), KTL 공장심사
INMETRO	브라질	KTL 시험(ILAC), KTL 공장심사
NOM	멕시코	KTL 시험(CB)
INEN	에콰도르	KTL 시험(ILAC) 및 인증
ST-COA, SIRIM	말레이시아	KTL 시험, KTL 공장심사
CoC, 에너지효율	싱가포르	KTL 시험(타 기관 CB 인정)
PSE, S-mark	일본	KTL 시험, KTL 공장심사
안전, EMC	베트남	KTL 시험, KTL 공장심사 및 외관검사
UL, FCC, BSMI(대만), CRS(인도) 등		KTL 시험 또는 현지 대행

\* 이외 비공고 인증/규격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 전화 (055) 791-3341

해외인증협력센터: 전화 (055) 860-1304

• 홈페이지 : customer.ktl.re.kr

#### 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중소 기업에게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준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제외

### < 지원 범위 >

- o 해외인증(CE, FDA, FCC, CCC 등) 분야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인증서 발행비 등). 시험(시험 비용), 심사(공장/서류심사 등) 및 컨설팅 비용(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 또는 70%) 지원
  - \* 지원 대상 해외규격인증(393개)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하며 성공조건부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지급

#### < 사업 진행 절차 >



### < 신청 방법 >

- o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지원신청서 접수(연중 3회 접수 신청)
- 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문 의 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전화 (02) 2164-0172~8
- 홈페이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 < 참고 > 국방제품에 필요한 관련 인증 예시

인증	구분	국가	인증	구분	국가
ANZEx(방폭)	의무	호주, 뉴질랜드	IECEE	민간임의	국제공통
AZS(전품목)	의무	아제르바이잔	IECEx	민간임의	국제공통
BSTI	의무	방글라데시	INEN-1	의무	에콰도르
CCA	민간임의	CCA(EEPCA)	INMETRO(전기안전)	의무	브라질
CCC(전기안전)	의무	중국	ISC	의무	캄보디아
CE(ATEX/EMC/ErP/LV D/MD, RoHS 등)	의무	EU(유럽연 합), 터키	ISI	의무	인도
CI_COC(전기안전)	의무	코트디부아르	KW-KUCAS(선적전검사)	의무	쿠웨이트
CN_ENERGY LABEL	의무	중국	LOA(전기안전)	의무	남아프리카 공화국
CPCB(WEEE/RoHS)	의무	인도	KEPSI(방폭)	의무	중국
DNV		노르웨이	QA-PVOC(선적전검사)	의무	카타르
DOD-QPL/QML(국방부조달)	의무	미국	RCM(전기안전)	의무	호주
EAC(기계, 방폭기기, 전기안전, 전자파 등)	의무	CU(관세동맹)	SLS	의무	스리랑카
ENEC	민간임의	CCA(EEPCA)	STQC(전기안전)	의무	인도
ESA(전기안전-온타리오)	의무	캐나다	Serbian Mark	의무	세르비아
ESMD(전기안전)	의무	홍콩	TDS	의무	투르크메니스탄
Energy Star	법정임의	미국	TZ_PVOC	의무	탄자니아
G-CAP(선적전검사)	의무	가나	UL	임의	미국
GS(품질안전마크)	법정임의	독일	URSEA(에너지효율)	의무	우르과이
Green Seal(친환경인증)	민간임의	미국	UkrSEPRO(전자파, 전기안전)	의무	우크라이나
ICC	의무	필리핀	선급형식승인	의무	국제공통

\* 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검색(국방기기), 정확한 인증대상여부는 인증별 상세정보에서 확인 필요

### 8-2. 성능시험 지원제도

민간업체가 수출, 국내 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官 주도로 성능시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관련 근거 >

ㅇ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의2(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 < 지원 대상 >

ㅇ 수출 또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구성품

#### < 지원 내용 >

ㅇ 성능시험수행 및 성능시험 결과서 발급(지원 필요 결정 시)

#### < 관련 기관 >

- ㅇ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국내 판매용, 수출용): 성능시험지원 접수
- 합참 시험평가부(국내 판매용). 방산진흥국(수출용) : 성능시험지원 조정·통제
- ㅇ 방위사업청 :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 \* 국내 판매용(합참 시험평가부), 수출용(방산진흥국)
- ㅇ 국방기술품질원 : 성능시험지원 주관 수행

### < 신청·접수 >

- ㅇ 접수 기간 : 연중
- 접수처: (국내 판매/수출용)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시험평가기술팀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우)04353
- ㅇ 제출 서류 : 성능시험 지원요청서 1부, 시험계획(안) 1부

####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Defense Exports Overall Guide Book

- < 성능시험 지원계획(안) 작성 및 승인 >
  - ㅇ (국내 판매용) 기품원이 요청업체와 협조 및 작성
    - \* 기간, 장소, 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 협조
  - ㅇ (수출용) 기품원이 요청업체와 협조 및 작성
    - \* 기간, 장소, 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 협조
  - 이 시험 기준
  - 기본원칙: 구매국의 요구 및 소요결정서
  - 그 외 항목 : 업체가 제시(요구)한 기준

#### < 결과 판정 >

- 전체(종합) 판정 : 없음
- ㅇ 각 항목별로 기준과 시험 결과에 따른 충족 여부만 기록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02) 2079-6377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시험평가기술팀 02) 2079-1395

### 8-3. 해외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 진출 시 진출 대상국에 대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권 확보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가.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지원

#### < 지원사업 안내 >

- o 상표권 출원 등록 지원사업 : 개인·중소(중견)기업의 상표 출원 비용 및 행정지원
- 디자인권 출원 등록 지원사업 : 개인·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권 출원 비용 및 행정지원
- o 피·침해조사 : 각 국에 등록된 피·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표권에 대하여 침해상황 조사 및 행정 단속을 통해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및 행정지원

#### < 신청 대상 >

- ㅇ 상표권 및 디자인권 출원 등록 사업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ㅇ 침해조사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전용실시(사용)권자 포함]에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 ※ 해외 특허출원 전 확인할 사항

ㅇ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사용 시에는 방위사업청장 등과의 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실시하여야 함

### 문 의 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전화 (042) 481-3573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전화 (02)3460-3352, 3359 ※ 신청사이트: www.ip-desk.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화 (02) 2183-5891~5

#### 나.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ㅇ 해외 지재권 이슈에 대한 기업 간 공동 대응체계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역량 강화

#### < 신청 기간 및 대상 >

- 신청 시기 : 매년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ㅇ 신청 대상 : 해외 진출(준비) 기업 및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 단체 등 3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 협의체 구성 시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여야 함

#### < 지원내용 >

- ㅇ 지원내용 : 권리 공통분석 등 3개 분야 11개 유형 지원
- ㅇ 수행기관 선정방식 :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 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 \* 단. 수행기관 지정가능 과제 및 다년도 지원 과제에 한하여 협의체가 시급한 공동 분쟁현안의 신속한 대응, 영업비밀 유지 및 전략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수행기관 사전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사업신청 시 해당 사유 기재)
- ㅇ 기업분담금 :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를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현물(인력투입비용)로 부담하며, 현금부담금 없음(무료)
  - \* 단. 협약 시 현물출자확인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신청 방법 >

○ 신청 방법 : IP-NAVI(ip-navi.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문 의 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팀: 전화 (02)-2183-5835, 5875

특허분쟁대응팀: 전화 (02)-2183-5873

• 홈페이지: http://insure.koipa.re.kr

# < 참고 > 세부 유형별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세부유형	지원 내용
권리 공통 분석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ul> <li>동종업계 공통의 위협특허(NPE 보유 혹은 경쟁사 보유)에 대한 대응 전략(회피, 무효, 매입 등) 마련이 필요한 경우</li> <li>해외 기업(특허풀 등)의 라이선스 요구 시, 기업들의 합리적 요율 산정을 위한 공통전략 도출이 필요한 경우</li> </ul>
공동 피소 대응	특허보증 공동대응 경고장 공동대응 피소·구상권청구 공동대응	<ul> <li>바이어에 부품, 제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 위험에 대한 특허보증을 요구 받고 있는 경우</li> <li>해외기업으로부터 동종업계 기업들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경우</li> <li>해외기업으로부터 공동으로 혹은 동종업계 기업이 피소를 받아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li> <li>바이어의 피소로 인한 공동 구상권 청구 현안이 발생하여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li> </ul>
	문제특허·문제상표 공동 법적대응	<ul> <li>해외기업의 분쟁 위협특허에 대한 공동무효·공동취소 심판 청구,</li> <li>공동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li> <li>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위협하는 해외기업의 문제상표에 대하여 공동무효·공동취소 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경우</li> </ul>
공동 법적 대응	무단선점상표 공동 법적대응 위조상품 유통 공동 법적대응 형태모방 등 법적대응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공동 법적대응(신규)	- 상표브로커의 상표무단도용 현안에 대해 공동 법적대응(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 심판, 복심청구 등)을 진행할 경우 ★ 참여기업 1社당 법적대응 대상상표의 개수제한이 없으며,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동일 판매자로 인한 해외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사 공동의 법적대응을 진행할 경우 - 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관련 피해사 공동의 법적대응 (경고장 발송,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침해여부 판단, 대응전략 수립 등 공동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수행기관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별도 평가협약할 수 있음
다년도 연계 지원		- 동일 협의체에 지식재산 분쟁이 지속되어 집중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쟁 현안의 경우(최초지원으로부터 3년간 최대 6회 지원) * 기 지원 협의체의 참여기업과 2社 이상 동일할 경우 동일 협의체로 인정 * 기존 과제와 과업내용이 동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3년 연속 지원 협의체의 경우 마지막 지원 이후 1년 동안 참여제한  < 예시 > 다년도 연계 지원 : 공동 법적대응 분야  1년차 1회 경고장 발송 1차(A국가)  1년차 2회 경고장 발송 2차(B국가)  2년차 행정단속  3년차 침해소송

# 09 방산수출 금융지원

방위산업, 치안 물자에 대한 직간접 금융지원과 프로젝트 앞 이행성보증 제공을 통한 수주 지원 방법을 안내합니다.

#### 가. 수출금융이란?

- 국제입찰참여, 수출계약 및 이행 등의 수주 시 정책금융지원과 신용보강을 통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등이 직·간접금융지원을 지원함
  - \* 국내 ECA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OECD 수출신용협약\* 상에 ECA 수출금융 지원방식은 ① 간접금융지원방식은 Pure Cover(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② 직접 금융지원방식은 Direct Credit(직접 신용 또는 리파이낸성, 이자율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규범 측면에서는 일반상품의 수출거래는 국제규범(WTO 보조금 협정, OECD수출신용협약) 준수가 원칙이나방산 수출은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에 따라 국제규범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편임
- 대부분의 선진국(특히 유럽)은 방산 수출에 대해 상업금융기관 이 Loan을 제공하고 ECA가 위험을 보증(Cover)하는 간접금융 지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공급자에게 제작자금을 대출하거나, 구매국에게 구매자금을 대출(구매자 신용)하는 방식, 또는 무역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일으킨 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

#### 나. 수출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 ㅇ 방산 수출의 경우 수출대상국가가 후진국으로 국가위험도가 높고 자국 재무 상황 등의 이유로 공급자에게 금융지원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ㅇ 또한 외국의 군수품 정부조달과 같이 장기거래로 대출 규모가 크거나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방산 분야의 경우 상업은행을 통한 일반 외화대출이나 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ㅇ 이러한 경우 국내 공적수출신용기관 등을 이용한 대출 및 보증이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 이용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다. 정책적 금융지원은?

- ㅇ 국내기업의 수출계약 시 구매국의 대금지급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출국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구매국 앞으로 제공하는 대출 또는 보증(보험)
- ㅇ 방산수출거래의 대형화 및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일반금융기관을 통해 구매국 앞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계약 체결 가능성을 제고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에서는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 수출 건별로 맞춤형 금융 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지원구조 예시>



#### ※ 신청절차

① 방산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② 국내기업 대상 제도안내 및 금융 자문 제공 ightarrow ightarrow 방산센터가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 ightarrow ightarrow 금융기관에서 구매국 정부에 지원의향서 발급  $\rightarrow$  ⑤ 금융계약 초안 작성  $\rightarrow$  ⑥ 구매국 정부와 금융기관 간 협상 진행  $\rightarrow$  ⑦ 금융계약 체결 및 보증지원 → ⑧ 대출 집행



#### 문 의 처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기획총괄실: 전화 (02)3460-7307
- 홈페이지: kotra.or.kr / kodits.kotra.or.kr

#### 라. 금융지원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ㅇ 무역보험법에 근거한 공적수출신용기관(Official Export Credit Agency, ECA)으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수단으로 우리나라 무역보험을 전담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을 하는 거래위험 제거 기능과, 무역,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지원의 자금조달 기능이 있음

#### 단기 수출거래 지원

- 소비재 등 단기 수출거래(결제 기간 2년 이내)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 수출보험

###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

- 수출 물품 구매·제작자금 조달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주요 자원 수입 자금지원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 플랜트, 해외 건설 등 중장기 수출거래 (결제 기간 2년 초과)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 기반 보험
-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 수출보증서 발급 지원
- 수출보증보험

#### 환율/이자율 헷지 지원

- 환율 변동 위험 담보
- 환변동보험
- 이자율 변동 위험 담보
  - 이자율변동보험

### <한국수출입은행>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수출거래 지원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Official Export Credit Agency, ECA)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하기 위하여 대외 거래에 따른 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임

- 수출입은행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수출신용,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목적의 대외경제협력기금, 통일 기반 조성과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이중 방산수출분야에 대한 금융은 공적수출신용에 해당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ODA 국제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군수품과 살상 무기, 테러와 관련한 분야에는 적용이 제한됨

#### 공적수출신용 (Export Credit Agency, ECA)

- 정부가 자국의 수출 촉진
   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대
   출・보증・보험을 통칭
- OECD 수출신용협약 을 준수하여 제공되 며, WTO 수출보조금 예외 허용
- 해외 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금융지원
-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목적으로 1987년 대 외경제협력기금 수탁
- 개도국 경제사업 개발에 대한 심사, 차관 공여 계약체결,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방향 연구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IKCF)

- 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에의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1991년 남 북협력기금 수탁
- 교류사업 및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 집행 및 사후관리
-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 은행으로 지정
- 북한·동북아 연구 및 대북 투자 통계
- 수출입은행에서 방산수출관련 지원하는 금융 상품은 직접 대출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과 보증(수출금융보증 등 채무보증. 이행성보증) 등이 있음

### < 방위산업진흥회 >

○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의 보증 애로 해소 및 고액 보증료 부담 완화, 정부의 국고채권 보전 안정화 도모, 방산물자, 군수품 및 시제품의 안정적 조달 기반 확보, 각종 보증행정 간소화 실현을 위하여 방위산업진흥회 기금을 설치・운영

#### 지급보증

-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의 입찰보증금, 계약 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지급 보증
-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 착·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 상금에 대한 지급보증

#### 위험보증

• 관급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 착·중도금, 기성대가 및 지체 상금에 대한 지급보증

# < 기관별 지원 내역 비교표 >

구분	상품명	내 <del>용</del>	기관	
보험·보증	단기수출보험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취 그 ㅁ 어 ㅂ 회	
	중장기수출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 법인 등)에게 수출대금을 2년 초과 상환조건으 로 대출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 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	한국무역보험 공사	
	수출금융보증	수출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앞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보증	ᄼᅕᅁᄋᆌ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 기관 앞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보증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수출필요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		
대출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 수출목적물의 제작 이행 에 필요한 자금지원	수출입은행	
	수출기반자금	국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지원		
	수출 이행성보증	수출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 가 요구하는 보증서를 발급	수출입은행	
	해외사업 이행성 보증	해외시업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시업주 가 요구하는 보증서를 발급		
이행보증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 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발주자)로 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 공사	
	보증기금이용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의 입찰보증금, 계약 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방위산업진흥회	

### 9-1. 수출신용상품

공적금융기관의 보험(또는 보증)상품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상품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보증 등 수출신용 상품을 안내합니다.

#### 가. 수출신용상품이란?

수출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또는 구매자 앞 외상을 제공하는 수출기업 앞으로 대출금(또는 수출대금) 상환을 보증(수출입은행) 또는 보험(무역보험공사)으로 담보해줌으로써 안정적인대출 및 상환을 통한 수주 지원

### 나. 기관별 금융지원 사례

### < 무역보험공사(수출보험(구매자신용)) >

ㅇ 단기수출보험, 중장기 수출보험(구매자신용) 상품이 있음

#### <지원 개요>

대상거래	단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일반수출, - 상환기간(신원 금융계약 (연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용기산점~최종상환일)이 2년을 초과하는  불금융을 제공하는 구매자 신용 방식에	
	(구매자신용)	내하여 내술	원리금 회수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비상	위험	신용위험	
담보위험	가 신용위험(Country Risk) - 기타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 한 사유로서, 계약 당사자에		채무동결 또는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협약으로 인한 수입자의	
	구분		내용	
주요계약	보험가액 다	대출원리금 or 수출대금		
내용	보험금액 보	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에서 K-sure가 정함)		
	지급보험금 손	:실액 × 부보율		
보험책임 개시일	중장기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일정한 선행조건 충족 후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 중장기수출보험 이 인출된 날에 보험 책임이 개시, 일정한 선행 (구매자신용) 조건은 중장기수출보험 - 선적 전과 동일		
보험료	보험료는 연불원금에 수입국 등급, 수입자 등급 및 보험 기간 등에 따른 OECD 최저기준 보험요율(MPR, Minimum Premium Rate) 이상 적용			



#### ※ 신청 절차

#### 1. 단기수출보험

① 상담단계 → ② 수입자 신용조사 → ③ 한도 청약 → ④ 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 ⑤ 선적의 통지(선적완료 통보 및 보험료 확정) → ⑥ 보험료 납부(보험관계 성립) → ⑦ 내용변경(중대한 변경 시 사전승인 필요)

#### 2. 중장기수출보험

- ① 상담단계\* → ② 예비 신청(수출계약 체결 전 신청) → ③ 청약(수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구매자 신용의 경우 자금 공여일 3개월 이전) → ④ 보험인수 승인 및 보험료 납부 → ⑤ 선적(또는 자금인출) 실행 및 통지 → ⑥ 내용변경(중대한 변경 시 사전승인 필요)
- \* 수출자의 요청이 있거나 거래추진에 필요한 경우 K-sure는 상담 결과 통지 또는 인수의향서 (Supported Letter 또는 Letter of Intent(LOI) 발급 가능



#### <C국의 수입자금 조달지원 사례>

- C社는 완성품 및 부품 제작기업으로, 나국 국방부와 수출 계약 체결
- 차주는 나국 재무부, 보험계약자는 B 은행임
- 지원조건으로는 계약금액 U\$XX백만불, 금융기간 8년(인출 3년, 상환 5년), 부보율 9X%, 보험료 5.XX%(OECD 수출 신용협약상 MPR 기준 일부 할인 또는 할증)
- \* (나국 : OECD 5등급 국가)
- 구매자 신용제공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증대,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전략상품 수출로 국익증진에 기여



####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 전화 (02)399-6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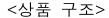
• 홈페이지 : k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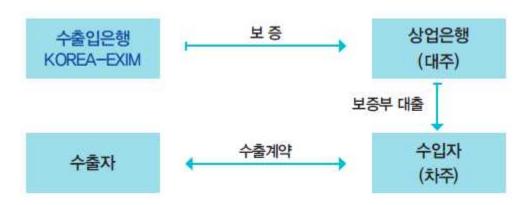
### <수출입은행(채무보증)>

ㅇ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 기관에게 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지원 개요>

구분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대상기업	수출관련대출의 지원	수입관련대출의 지원	해외사업관련대출의
(주채무자)	대상이 되는 기업	대상이 되는 기업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ᆸᄌᄼᆐᄀ	지원 대상 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발		
보증수혜자	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 채무 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신청서류	신청서류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담보제공· 계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 ※ 신청 절차

① 상담단계(수출계약서, 이행 능력, 현지 출장 등) — ② 신용평가(지원조건 확정 승인서류 접수)  $\rightarrow$  ③ 보증신청(승인 절차 진행)  $\rightarrow$  ④ 보증승인(채권 서류 안내 및 접수)  $\rightarrow$  ⑤ 계약체결 → ⑥ 보증서 발급



####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모빌리티금융부 : 전화 (02) 6255-5168
- 홈페이지 : koreaexim.go.kr

# 9-2.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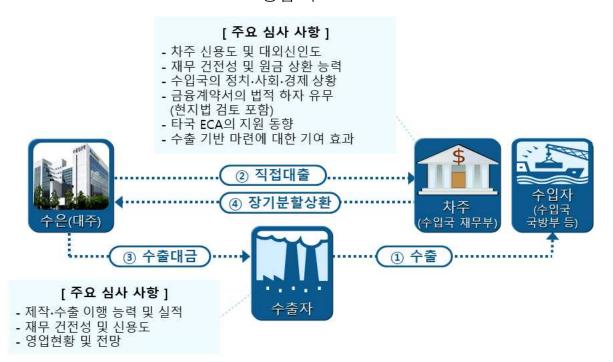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영 중인 공적수출신용(대출 및 보증, 이행보증) 상품 중 방산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금융 조달 상품을 소개합니다.

 직접 대출은 수출기반자금 등 수입자 앞 금융과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등 수출자 앞 금융이 있으며 이는 국내기업으로 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 정부,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 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대출 금융 상품임

### <수입자 앞 금융(수출기반자금)>

- 수입자 앞 금융(수출기반자금)은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 정부, 외국기업을 차주로 하는 수입결제자금 지원임
- 수입국의 요청에 의한 금융지원 검토 시 수입국 재무부 및 국방부 등의 지원요청서(LOI) 등 공식서류 수령 후 개시
- 대출 심사 자격요건, 절차, 지원조건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 및 구매국 신용등급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대출에 대한 이행능력평가는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자 이행 능력 평가를 중점 검토하며, 대출심사비용은 차주가 부담함

#### <상품 구조>



#### <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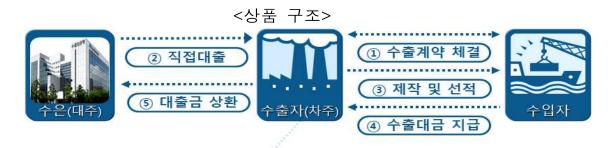
구분	주요내 <del>용</del>
대상기업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자금용도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수입결제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소요 자금의 90%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수출목적물의 제작 기간 + OECD 수출신용 협약에서 정한 상환기간 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거치기간 3년(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가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등

#### ※ 신청 절차

- ① 상담단계(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등)  $\rightarrow$  ② 신용평가(지원조건 확정 승인서류 접수)  $^*$   $\rightarrow$  ③ 보증 신청(승인 절차 진행)  $\rightarrow$  4대출 승인(채권 서류 안내 및 접수)  $\rightarrow$  5 계약체결  $\rightarrow$  6 대출 집행
-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 전문가 실사 과정이 필요함

# <수출자 앞 금융(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 o (수출성장자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품 생산·수출 시 필요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 대출 지원
- ㅇ (수출이행자금)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목적물 제작 및 대금 회수 시 까지 필요한 자금 대출 지원



#### [ 주요 심사 사항 ]

- 제작·수출 이행 능력 및 실적
- 재무 건전성 및 신용도
- 영업현황 및 전망
- 담보의 적정성
- 수출 기반 마련에 대한 기여 효과

#### <지원 개요>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대상기업	<ul> <li>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 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li> <li>우대지원 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 너지신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 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li> </ul>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 (해외건설공사 제외) 하거나 수출목적물 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 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ul> <li>대출기간 6개월: 수출실적의 80% 이내</li> <li>중소중간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90% 이내, 우대기업 및 우대자원 산업의 경우 100% 이내</li> <li>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수출실적의 950% 이내</li> <li>중소·우대중건기업의 경우 70% 이내,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의 경우 100% 이내</li> <li>*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이며, 수출규모등에 따라 최대 600억원 (중소기업 400억원, 유예중소기업 600억원)까지 증액 가능</li> </ul>	•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 × 90% 이내 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 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 × 50% 이내
대출기간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ul> <li>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li> <li>(대출집행) 향후 6개월 소요자금 이내 에서 선 집행</li> </ul>
상환방법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 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 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 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 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 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각 자금 용도별 증빙서류 등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중복수혜방지획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외화대출시), 담보제공 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각지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 신청 절차

- ① 상담단계(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등)  $\rightarrow$  ② 신용평가(지원조건 확정 승인서류 접수) $^*$   $\rightarrow$
- ③ 보증신청(승인절차 진행)  $\rightarrow$  ④대출승인(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rightarrow$  ⑤ 계약체결
- → ⑥ 대출 집행



#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모빌리티금융부 : 전화 (02) 6255-5168
- 홈페이지 : koreaexim.go.kr

# 9-3. 이행보증

안정적인 수출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상품을 안내합니다.

### 가. 이행보증상품이란?

- ㅇ 안정적인 수출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내용
- 수출보증(Export Bond)이란 발주처가 수출자의 계약이행을 담보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하는 요구불 보증을 의미하며, 수출자의 계약 미 이행시 금융기관이 발주처 앞 보증채무를 이행
- ㅇ 수출보증보험(증권)이란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자.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Bond-Calling, Call)를 받아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 계약으로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하고, 수출보험사가 직접 수출자 앞으로 구상권을 행사 (업무 편의상 금융기관이 직접 보험계약자가 되는 상품도 존재)

78	LIIO	기관			
구분	내용	수은	무보	방진회	기타
범위	거래대상범위	국외	국외	국내	
입찰보증 (Bid Bond)	입찰 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낙찰된 후 계약체결 미응시 또는 일정 기간 내 계약이행보증서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등	0	0	0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 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0	0	0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수출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 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	0	0	0	
하자보수보증(M aintenance Bond)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0	0	0	
유보금보증 (Retention Bond)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0		
기타이행성보증	지재선수금환급보증(Material Bond) 및 세금 유보금환급보증(Tax Petention Bond)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대신 보상	0			
	관급품위험보증			0	

## 나. 기관별 금융지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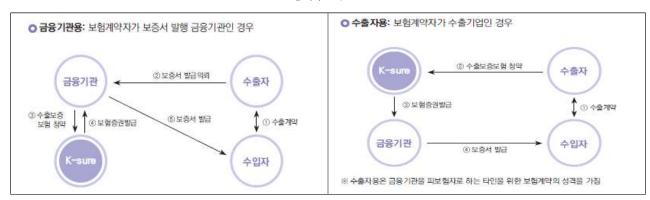
# <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후 수입자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국제 거래 시 수입자는 수출자의 수출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수출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수출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증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 (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를 받아 대지급 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임
  -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수익자(Beneficiary)가 수출보증서에 기재된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단순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서 발행기관은 보증서 에 정해진 금액과 독립적으로 지급하게 됨

#### <지원 개요>

대상거래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제외) ● 기타 서비스·용역 수출			
담보위험	<ul> <li>정당한 보증채무이행청구(Fair Calling):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사유가 수출자의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경우</li> <li>* (Fair Calling시 수출자 앞 구상권 발생) 금융기관용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전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수출자용의 경우 K-sure가 수출자에게 구상권 행사</li> <li>부당한 보증채무이행청구(Unfair Calling): 보증채무이행청구가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수출자가 수출계약 채무를 이행한 경우</li> <li>수출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수출자가 수출계약 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출계약 자체에서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li> </ul>			
	구분 내용			
	보험가액 수출보증서상에 표시된 보증금액			
주요계약내용	보험금액 보험가액 × 부보율(100% 이내에서 자의 신용을 감안하여 K-sure가 정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부보율			
신청서류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담보제공관련 계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 <상품 구조>



### <D국의 수출보증보험 발급 지원 사례>



- D社는 다국 국방부가 발주한 군 기지 및 관련 인력 훈련학교 건설계약 수주(U\$X억 규모)
- 발주자는 수출계약 발효조건으로 계약이행보증 (P-Bond), 선수금 환급 보증(AP-Bond) 발급 요구
- 다국의 내전 및 테러위험 등을 우려한 은행들은 이행성 보증서 발급에 난색 표명
- 무보는 D社, 다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위험 경감장치 마련 후, 수출보증보험 지원 결정
- 공사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K은행이 이행성 보증서를 발급하여 수출계약이 발효되었고, 이후 D社는 순조롭게 계약이행

\* 출처 : 무역보험공사

### <수출입은행(이행성보증)>

-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 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로 보증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출입은행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보증 의뢰인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지원 개요>

구분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대상기업	국내기업 또는 해외	국내기업	국내기업 또는 해외
(보증의뢰인)	자회사		자회사
대상거래	수출촉진 및 수출 경쟁력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해외투자 및해와 업의 활성화
	제고와 관련된 제반 거래	과 관련된 제반 거래	와 관련된 제반 거래
보증수혜자	수출 배 또는 공 계약을 발주 또는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선수 금을 지급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추진에 기여하는 자      보증수혜지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사인금융기관 또는 보증대상거래의 의 컨소시엄 주관사	<ul> <li>보증대상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li> <li>보증대상거래의 추진에 기여하는 자</li> <li>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외금융기관 또는보증 대상거래의 컨소시엄 주관사</li> </ul>	<ul> <li>지원대상 사업을 발주하는자</li> <li>보증대상거래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자</li> <li>보증대상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li> <li>보증대상거래의 추진에 기여하는 자</li> <li>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외금융기관 또는 보증대상거래의 컨소시엄 주관사</li> </ul>
보증금액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	• 보증대상거래의 계약서	•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
	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에서 요구하는 금액	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	범위 내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
신청서류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담보제공관련 계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 <이용 절차>

#### ※ 신청절차

① 상담단계(보증대상기업 신용도, 프로젝트 사업성 등)  $\rightarrow$  ② 신용평가(지원조건 확정 승인 서류 접수)  $\rightarrow$  ③ 보증신청(승인 절차 진행)  $\rightarrow$  ④ 보증승인(채권 서류 안내 및 접수)  $\rightarrow$  ⑤ 계약체결  $\rightarrow$  ⑥ 보증서 발급



#### 문 의 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 전화 (02)399-6230한국수출입은행 모빌리티금융부 : 전화 (02) 6255-5168

###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보증기금 활용) >

- 방산물자, 군수품의 조달·연구개발 및 시제생산 계약의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업체의 보증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
- ㅇ 설치 목적에 근거하여 보증기금에 출자한 방산업체 또는 방산 관련 업체가 보증채권 및 보증계약자로 한정됨
- 방위사업법 제 34조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같은 법 제 18조 제5항에 의하여 군사용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는 물자 또 는 시제품 생산을 위촉받은 물자 및 방위사업법 제 3조 2호에 의한 군수품으로 대상이 한정
- ㅇ 보증 대상이 방진회 회원사로 한정되어 국내 거래에 대한 보증만 가능하며, 해외수출자 또는 수입처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보다는 국내 공급 및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부분품 공급 등에 적용 가능한 보증 형태로 볼 수 있음

#### <지원 개요>

보증계약자	방위산업진흥회 보증기금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보증채권자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ㆍ출연기관 보증계약자인 경우 ● 각 군 본부 및 예하 기관과 부대 ● 공공기관 ● 방산업체 ●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직할기관 ● 방위사업청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 각 군 본부 및 예하 기관과 부대 ● 방산업체		
보증내용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선금, 착중도금, 기성대가,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 관급품위험보증 등		
요율	방산업체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기본요율x보증기간/365x신용할인율x 우대할인율x장기가입할인율을 차등적용		



#### 문 의 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보증사업본부 : 전화 (02)3270-6076
- 홈페이지: kdia.or.kr

# 10 절충교역 활용 수출

방산물자 수출입 시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국내외 업체가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통한 방산 수출 기회 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 10-1. 절충교역이란?

### 가. 절충교역(Offset)이란?

- ㅇ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ㅇ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및 국제공동개발·생산 참여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돕고 수출활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 절충교역의 유래

• 1960년대 초반 미국에서 군사력을 지원한 비용만큼 미국 무기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현금지불이 서로 "상쇄(Offset)"되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고가의 군사 장비들을 해외로부터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를 절감하고 향후 독자적인 방위산업 체제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나. 지원법령 및 규정

-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제20조(절충교역). 동 시행령 제26조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9호) 0
-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8-273호) 0
- 「절충교역 지침」(방위사업청예규 제632호)

# 다. 절충교역의 종류

구분	종류	세부내용
군용물자와의	직접 절충교역	구매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 이전 및 부품생산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
관련성	간접 절충교역	구매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 없는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
수혜 분야	군수분야 절충교역	무기체계 개발 기술, 부품 제작 참여, 군수 지원, 군수품 수출 등
	민수분야 절충교역	민수제품 수출,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국방 절충교역 대상 물품이 중소기업 일반 물자까지 확대)
-11.41	수입 절충교역	정부의 국외구매사업 추진 시 해외 방산업체의 절충교역 의무이행
대상	수출 절충교역	국내기업의 방산물자 수출 시 구매국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이행

# < 기관별 역할 >

구분	종류	세부내용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절충교역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업무지원 절충교역 계약 관련 계획수립 및 협상 방안을 수립 및 분석, 협상, 이행관리 및 성과분석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시 절충교역 추진 여부 및 방향 검토, 절충교역 협상 지원		
	군수분야 절충교역	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 산업진흥회		
지원기관 (협상 접수 및	민수분야 절충교역	산업협력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KIAT(운영), 전담 기관(접수 및 평가)	
제도지원)		민수분야	중기벤처부/ 중소기업진흥공단(운영 및 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평가)	
		절충교역 활용지원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내업체		협상 방안 제출, 컨설팅 참여		

### □ 수입 절충교역

○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 규모(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 를 구매하는 국외구매 사업의 경우 계약 당사자(해외 방산업체)로 부터 부품 제작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 받는 제도



### < 대상 사업 >

- 단위 사업별 금액이 1천만 USD이상인 국외구매사업 중 무기 체계별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하여 결정
- 적용 비율(기준): 경쟁 여건이 형성된 상업구매: 50% 이상경쟁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업구매: 10% 이상

#### ※ 절충교역 적용 제외

- · 수리부속품 및 유류 등 기초원자재 구매의 경우
- · FMS로 추진하는 사업, 연구개발의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
-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방추위) 심의를 거친 경우

### < 유의 사항 >

- 분야별(기술 이전, 부품 제작 수출, 군수지원 등) 특성에 맞추어 세부 내용 작성
- ㅇ 참여 절차 확인
- 국외업체가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확인하며 국외구매 참여 이전부터 절충교역 이행을 고려하여 국내 관련 기업을 먼저 파악하는 경우가 있음

### < 이행 주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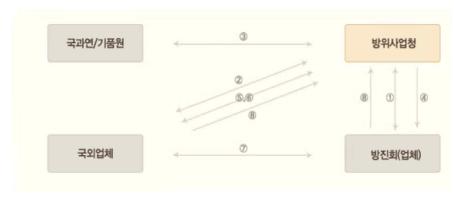
- (방위사업청)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대상 사업 통보, 제안요청서 접수, 선정, 절충교역 협상 방안\* 수립, 협상, 이행 확인 등
  - \*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등 군수품 및 산업협력/민수분야 추천 품목 연계 수출 포함
- (국외업체) 절충교역 이행
- (국내 중소기업) 절충교역 협상 방안 제출

종류	세부내용		
군수분야 절충교역	대상 사업(예정) 공고(방위사업청)→제안요청서 제출(각 군,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가치평가 후 선정(방위사업청) (*k-offset.com운영 예정)		
민수분야	산업협력 분야	신청서 접수(KIAT, 전담 지원기관*)→ 추천 품목 결정(실무 위원회)→추천 품목 DB 등록·관리(전담 기관)→품목추천 * 전담 기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 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절충교역	민수분야	참여 희망 기업 신청·접수(중진공)→현장평가(지방청 수출지원센터)→추진 분야 품목 검토/업체선정(실무위원회) →자료접수 및 사이트(offset.gobizkorea.com) 등록(중진공)	

### < 참여절차 >



- \* 출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지원제도 2018
  - < 업무 흐름도(군수 분야) >



#### 추진업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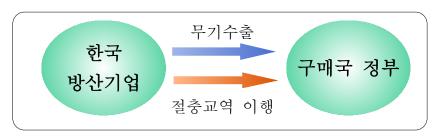
- 1. 대상사업 및 협상대안 자료 (방위사업청  $\hookrightarrow$  방진회  $\hookrightarrow$  국내업체)
- 2. 제안요청서 발송/접수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 3. 기술가치 평가 의뢰/접수 (방위사업청 ↔ 국과연/기품원)
- 4. 업체선정 결과 통보 (방위사업청 → 방진회〈국내업체〉)
- 절충교역 협상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 6. MOA/MOU 체결 (방위사업청 ↔ 국외업체)
- 7. 하도급 계약 체결 (국외업체 ↔ 국내업체)
- 8. 이행 보고서 제출 (국외업체, 국내업체 → 방위사업청)
- \* 출처 : 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전화(02) 2079-6351~2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수출지원팀 : 전화 (02) 3270-6083~4

### □ 수출 절충교역

○ 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 시 구매국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장비 또는 부품 수입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수출 절충교역의 구분>

#### 국방 및 방산 분야 절충교역 구분 민수분야 절충교역 **KOTRA** 이행지원 방위사업청 주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 국방과학기술 이전 ㅇ 산업협력 ○ 수출 품목 현지생산/협력 생산 (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ㅇ 구매국 군수품 대응구매 ○ 민수 기술 이전 지원 ○ 국내 연구개발 참여 내용 ○ 구상무역 ㅇ 정비시설 및 장비 이전 ㅇ 민수제품 구매 ○ 잉여 군수물자 이전 ○ 민수분야 교육지원 등 ○ 운영 경험 지원 및 후속 군수지원

# < 이행 주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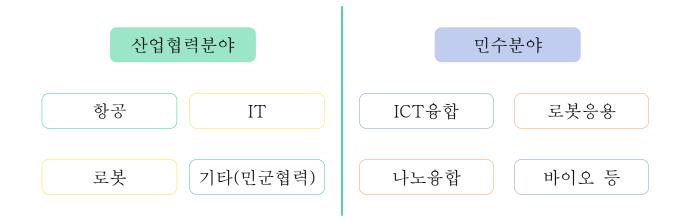
- ㅇ 당사자(수출 국내업체 및 구매국 정부)간 이행
- < 정부 지원사항(방위사업청 검토하에 지원 가능) >
  - ㅇ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제안서 작성 및 협상 관련 사항
  - ㅇ 구매국 및 제3국과의 절충교역 협정체결 등 국가 간 협력 사항
  - ㅇ 국외구매 사업 및 절충교역과 연계한 이행지원 사항
  - ㅇ 국내 보유 기술의 이전을 통한 지원 관련 사항
  - ㅇ 구매국과의 방산 협력(대응구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지원관련사항
  - ㅇ 국방부 및 각 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사항

### 라. 절충교역의 가능 분야

- o 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기술지원)
- ㅇ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군수지원)
- ㅇ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국제 공동개발)
- ㅇ 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 ㅇ 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 ㅇ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군수품 외의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한 물자의 연계 수출,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

### < 추천 품목 >

- ㅇ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국방 절충교역 품목」으로 선정,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에 신청하여 선정
- 국방절충교역품목은 「offset.gobizkorea.com」에서 확인



# 10-2. 부처별 지원사업

절충교역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가.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방위사업청)

-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절충교역 참여 방법, 절차와 협상 방안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와 수출상담주간 운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절충교역 참여전략 수립 및 협업 유지
-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에 기술력 및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도록 수출 상담주간 운영 (1:1 상담 기회 제공)

### < (컨설팅) 참여 방법 >

-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방위사업청 주관) 등 분기별로 방위산업 관련 주요 행사와 협업하여 컨설팅 부스 운영 예정이므로 각 행사 주관기관의 사전 홍보 기간 중 신청을 통해 참여
- 수시 컨설팅 참여 희망 시 방진회·기품원·산자부·중기부를 통해 방위사업청으로 신청

# < (상담주간) 참여 방법 >

개최계획 확인 후 참여 신청(방진회 등을 통해 개최계획 홍보 및 사전 신청 접수)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 전화(02) 2079-6351~2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수출지원팀 : 전화 (02) 3270-6083~4

### 나. 절충교역 관련 주요 제도(방위사업청)

- < 참여 대상 >
  - ㅇ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사업 내용 >

- ㅇ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를 위한 가치 승수\* 제도 운영
-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 참여시, 제작(수출) 금액의 3배 가치 인정 (대·중견기업은 1.5배)
- 군수품 수출, 외국 물량 정비 참여시, 계약금액의 2배 가치 인정 (대·중견기업은 미적용)

#### ※ 가치승수 제도란?

- 절충교역의 가치란? 국외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절충교역 의무를 측정하고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이며, 표시형식은 미화 또는 각국의 화폐단위를 사용
- 가시승수란? 절충교역 원래 가치에 절충교역 참여 종류(범위)에 따라 적용하는 배수 \* (한국) 수출 1~1.5배, 기술이전 2배, 투자 1배 등 (터키) 수출 1~5배, 기술이전 3~8배, 투자 4배 등
- (사례) A해외기업이 절충교역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U\$1천만 수입시 가치승수 1.5배적용, 절충교역이행가치는 U\$1.5천만으로 인정
- ㅇ 사전가치 축적(Banking) 제도 도입
- 미리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고 그 가치를 축적하는 제도
  - \*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법
- ㅇ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 무기체계의 해외 구매 시,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

### 문 의 처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 전화 (02) 2079-6352

# 다. 절충교역을 이용한 마케팅 지원사업(KOTRA)

해외의 절충교역 의무 보유 기업과 국내기업을 매칭 하여 해외 유수 방산기업의 가치사슬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 지원 내용 >

- 산업협력 GP(글로벌 파트너링)사업
- 해외기업 수요조사 후 동 기업과 1:1 매칭 기회 및 상담 부스 지원
- ㅇ 국내외 전시회 연계 상담회
- 해외기업 수요조사 후 동 기업과 1:1 매칭 기회 및 상담 부스 지원
- ㅇ 절충교역 온라인 수출상담회
  - 절충교역을 수행 예정인 국외업체와 국내 기업 간 1:1 온라인 수출상담회 진행 ('21년도 신규 사업)

### < 대상 기업 >

- ㅇ 방산 및 일반물자 제조 국내기업
- 해외기업 수요에 맞는 국내 제조 기업

# < 사업 일정 >

- 산업협력 GP(글로벌 파트너링)사업 : 상반기 2개 사 예정
- ㅇ 국내외 전시회 연계 상담회 : 하반기 ('21년 10월 예정, 추후 변동 가능)
- 절충교역 온라인 수출상담회 : 2회 (전/후반기 각 1회-6/11월)
  - \* 방위사업청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 신청 방법 >

ㅇ 일정에 따라 별도 모집(담당자 문의 요망)



#### 문 의 처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방산교역실 : 전화 (02) 3460-7803~7

기획총괄실 : 전화 (02) 3460-7813

# 10-3.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 절충교역 수주 전 검토해볼 사항들 >
  - ㅇ 프로젝트별 수주 프로세스
  - ㅇ 절충교역 조건 확인
  - 절충교역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
    - \* 비경쟁, 소규모 상황에서 통상 기본가의 2~10%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
  - 경쟁상황 및 구매국의 경제, 산업기술 수준에 따라 최소 비용 발생(추정)
  - ㅇ 수주 영업계획 및 협상 계획수립
  - 사업추진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대비
  - 절충교역 협상은 협상 방안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작성, 가치평가, 협상 등을 거쳐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0 입찰 참여 의사결정
  - ㅇ 제안계획 수립
  - 기술 이전 및 기술협력 계획
  - 현지 고용 창출 등 민간 산업 및 경제 역량 분석과 경제 하부기반 분석 등
  - 0 입찰 참여 타당성 검증
- < 미 이행시 파생 가능한 사항 >
  - ㅇ 조달 실패
  - ㅇ 벌과금 지불 및 재정적 위험
  - ㅇ 신뢰성 상실 및 향후 입찰 경쟁률 저하
- < 참고할 자료 및 사이트 >
  - ㅇ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업무 매뉴얼
  - ㅇ 사이트
  - k-offset.com(한국방위산업진흥회)
  - offset.gobizkorea.com(국방절충교역품목)

# [참고] 방산 수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분류	기관/기업	주요 업무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통제(전략물자 관리 및 수출통제대상국 선정), 산업협력 분야 절충교역	www.motie.go.kr
정부기관	국방부	무관 파견, 정책 수립, 국제방산협력	www.mnd.go.kr
	방위사업청	수출통제, 허가, 수출지원, 국제 방산 협력	www.dapa.go.kr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www.D4B.go.kr
	KOTRA	수출지원, 해외무역관 운영	www.kotra.or.kr
	방산물자교역지 원센터(KODITS)	방산수출지원, 정부간계약	www.kodits.kotra.or.kr
유관기관	전략물자관리원	군용 전략물자 등 수출 허가 신청, 수출통제체제 확인	www.yestrade.go.kr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 이전계약, 기술료, 민군협력(국방벤처)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기술 자문, 해외국방정보	www.dtaq.re.kr
		국방기술통합정보서비스(DTiMS)	www.dtims.dtaq.re.kr
		방산 협력, 정보제공, 보증기금	www.kdia.or.kr
협회	방위산업진흥회	절충교역 품목추천	k-offset.com
		방위산업교육센터	edu.kdia.go.kr
정보수집	국기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확인 및 서식	www.law.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산업협력 분야 절충교역	www.kiat.or.kr
절충교역	중소벤처기업부	민수분야 절충교역 신청	www.exportcenter.go.kr
	수출지원센터	국방절충교역안내	offset.gobizkorea.com
70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이행보증상품	www.ksure.or.kr
금융	한국수출입은행	융자, 보증, 이행보증상품	www.koreaexim.go.kr

# [참고문헌]

### 〈법, 규정, 고시 등〉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절충교역 지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 〈홈페이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홈페이지(kodits.kotra.or.kr)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방위사업청 D4B(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d4b.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yestrade.go.kr)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dia.or.kr)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g.re.kr)

국방절충교역품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

해외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certinfo.or.k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customer.ktl.re.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etch.go.kr)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 〈발간물〉

방위사업청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제도 GUIDE(2019)

방위사업청 2018 방위산업 지원제도(2018)

방위사업청 방산육성-국방조달 길라잡이(2020)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제도(2019)

방위사업청 18'~22'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2018)

국방기술품질원 2017년 방산수출 시장진출 가이드북(지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Start-Up Guide Book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계(DQMS) 인증 소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총람 제1~3권(2018)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해외 국방조달시장 가이드북(2020)

KOTRA 2021 서비스 가이드북

KOTRA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가이드(2018)

KOTRA 지사화사업 우수사례집(2020)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해외무역관 조사 자료

KODITS KODAS 2020 (2020)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매입) 제도 안내(2019)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안내(2019)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안내 제1권(2019)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위산업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제도(2018)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방산 관련 수출금융 지원계획(2018)

KOTRA자료 19-007 ('21년 6월 수정)

#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발 행 인 | 유정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1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02-3460-7813)

I S B N | 979-11-6097-909-1 (93320)

979-11-6097-910-7 (95320) (PDF)

